

〈번역〉

## 볼테르, 『범죄와 형벌』에 대한 해설\* \*\*

林美京\*\*\* 譯

해제 : 형벌개혁의 두 선구자—볼테르와 벡카리아—의 대화

한인섭\*\*\*\*

18세기 유럽의 지성사, 사회사에서 볼테르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의 관심사는 백과전서적이었으며, 그의 활동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그의 활동무대도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생전에 투옥과 망명을 거듭하며 유럽각국에서 활동의 궤적이 펼쳐졌다. 당대에 이미 그의 영향력에 비견할 만한 인사는 없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은 거듭 확인되고 있다.

볼테르가 범죄와 형벌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761년 장 칼라스 사건을 통해서이다. 개신교도인 장 칼라스는 자살한 아들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고문과 함께 자백을 강요받고, 수레바퀴로 처형당했다. 볼테르는 이 사건을 앙시앵 레짐의 행정의 문제점을 집약하는 사건으로 부각시켰다. 수많은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는 관용과 자유를 국가활동의 기본 지표로 삼아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1763년 『관용론』을 썼다.1) 이 저서는 그가 1779년 죽을 때까지 가장 애장하던 책이었다.

볼테르가 부각시킨 칼라스 사건 및 볼테르의 『관용론』은 유럽 전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태리의 밀라노의 소장 지식층들은 이 사건에 특별히 주

\* Voltaire, *Commentaire sur le livre Des Délits et des Peines*, 1766. 표지에는 “어느 시골 변호사가 쓴 『범죄와 형벌』 해설”이라고 되어 있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다.

\*\*\* 임미경,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 박사, 서울대·중앙대 강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볼테르, **관용론**, 송기형·임미경 옮김, 한길사, 2001.

목하게 되었고, 그들은 구시대적 범죄와 형정의 문제를 비판했다. 그러나 볼테르는 이러한 문제를 자유와 관용의 확산으로 해결하려고 한 데 반해, 밀라노의 청년들 중 하나인 벡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제도 및 자의적인 형사절차의 개혁이라는 제도개혁의 과제로 접근했다. 벡카리아는 1764년 익명으로 『범죄와 형벌』을 썼다.<sup>2)</sup> 그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대담하게 저술했고 실행에 착수한 일을 이태리에서 보다 명료하게 처음으로 제출”<sup>3)</sup>한 점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그 다른 나라의 저술 속에 볼테르의 저작이 포함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벡카리아의 겸손함과 상관없이, 『범죄와 형벌』은 즉각 전 유럽을 강타했다. 인쇄술의 시대 이래 이처럼 빠르게 확산되었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달리 없다고 평가될 정도이다. 이 책의 프랑스판이 바로 출간 다음해에 간행되었다. 볼테르는 1766년 『범죄와 형벌에 대한 해설』을 썼다. 볼테르는 벡카리아의 책을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는 귀한 약’으로 격찬했다. 볼테르의 종교적·철학적 관용은 벡카리아에 영향을 주었지만, 다시 볼테르는 벡카리아를 통해 기존의 가혹하고, 모순에 차 있고, 애매하고, 자의적인 법제 및 관행에 중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제도적 원리를 확인하게 되었다. 볼테르는 이단차 처벌, 신성모독, 마녀재판, 자살 등에 대한 기존의 처벌관행의 불합리성을 세세한 예를 들어가면서 비판하고 있으며, 벡카리아의 관점이 가진 장점을 예증하고 있다.

볼테르의 『해설』은 벡카리아의 가치를 한층 높여 주었다. 이후 나온 벡카리아의 각국어 번역본에는 이 볼테르의 『해설』이 함께 포함된 저작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볼테르는 많은 분량과 풍부한 내용의 해설을 통해, 벡카리아 저작에 대한 보증수표를 발행한 셈이다.

벡카리아는 1766년 파리여행을 한 뒤 환대와 상찬에 질려 더 이상의 개혁전도사의 역할을 포기하고 뒷전으로 물러섰다. 반면 볼테르는 서거할 때까지 형벌개혁에 정력을 집중했다. 그가 사망한 해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10년 전이었다. 혁명이 일어나자 혁명의 선구적 사상가로 추앙받은 볼테르의 주장들은 벡카리아의 저작과 함께 형벌제도의 개혁, 형사절차의 정비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했다.<sup>4)</sup>

이제 임미경 박사를 통해 볼테르의 『해설』이 번역됨으로써, 법학도들은 인도주의적 형벌을 향한 개혁가들의 발자취를 보다 착실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었

2)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한인섭 옮김, 박영사, 2006.

3) 벡카리아, 앞의 책, 47쪽.

4) Marcello T. Maistro, *Voltaire and Beccaria as Reformers of Criminal Law*,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2.

다. 이미 임미경 박사는 볼테르의 『관용론』을 유려하게 번역함으로써 이미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데다, 이 『해설』의 번역을 통해 뒷부분의 가교를 놓았다. ‘칼라스 사건’(1761), 볼테르의 ‘관용론’(1763), 백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 그리고 볼테르의 ‘해설’(1966)로 이어지는 지적 여정은 그 자체로 흥미 있는 사상여행일 뿐 아니라, 개혁가의 정열과 지적 대화의 기록으로써 가치를 더한다. 이러한 지적 여정을 따라가면서, 근대법의 핵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오늘날 당연히 여기고 있는 입법과 제도의 뿌리가 무엇이었던가를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근대 자체보다 근대의 ‘여명’이 더 매력 있는 지점일 수 있다. 그것도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옹호했던 사상가들의 육성을 통해 느끼게 되는 ‘전율과 감동’을 추체험할 수 있다면 말이다.

## I. 이 해설서를 쓰게 된 계기

『범죄와 형벌』이라는 이 작은 책을 읽고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는 아주 귀한 약과도 같은 것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악(惡)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이 많은 나라의 법제(法制) 속에 잔존하는 야만적인 요소를 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얼마 전 어느 지방 도시에서 18세 된 한 처녀가 교수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 이 일을 알게 된 나는 인간도 어떤 변화, 어떤 도덕적 교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보통 가정에서 태어난 그 처녀는 아름답고 늘씬했으며, 숨씨도 여러모로 빼어났다고 한다.

그녀의 죄는 누군가의 강제에 의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했고, 게다가 낳은 아이를 유기했다는 것이었다. 이 불쌍한 처녀는 산고가 덮쳐오자 부친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어느 샘물가에서 해산을 했다. 여자로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큰 수치심 때문에 그녀는 부친의 집으로 돌아와서도 자신의 일을 숨겼다. 그냥 내버려둔 아이는 다음 날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그녀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하여 그녀는 교수형에 처해진 것이다.

이 처녀가 저지른 잘못 중 첫 번째 것은 가족의 비밀로 묻혀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법률로써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즉,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처녀를 유혹한 남자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를 관대히 다루어야 하며, 처녀로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그녀를 옹호하고 있고, 그 외에도 그녀에게는 힘들게 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큰 불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잘못 중 두 번째 것은 훨씬 큰 죄악이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의 결과인 아이를 버렸으며,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그 어머니에게도 반드시 죽음을 내려야만 하는가? 그녀가 아이를 직접 죽인 것은 아니다. 그녀는 행인 누군가가 이 죄 없는 생명을 가없이 여겨 거두어 주리라고 기대했다. 되돌아가서 아이를 살리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어머니라면 당연히 품을 만한 감정이다. 법에 따르면 이 시골 처녀는 명백히 죄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은 정의롭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며 유해한 것이 아닌가? 이 경우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법이 아이를 죽인 사람과 아이를 버린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비인간적인 이유는 한 불행한 여인을, 죄라고는 연약하다는 점과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불행을 숨기려 했던 일밖에 없는 여인을 잔인하게도 처형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이 유해한 이유는 이 사회로부터 한 명의 구성원을, 지방 인구의 감소가 걱정거리인 이 나라에 국민을 생산해주어야만 했을 한 여성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자비의 손길이 외면한 결과 이 나라에는 아직도 버려진 아이들을 양육할 구호 시설이 세워지지 않았다. 자비가 없는 곳에서 법은 가혹해지기 마련이다. 그 처녀의 경우와 같은 불행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벌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편이 더 낫다. 진정한 법이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죄지는 약한 여자를 죽음에 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여자가 저지른 잘못에 악의가 없었고,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스스로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말이다.

## II. 형벌에 대하여

위의 불행한 사건을, 또 법이 이 사건을 그토록 가혹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여러 국가의 형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도적 심성을 지닌 『범죄와 형벌』의 저자는 범죄보다도 그 범죄에 가해지는 형벌이 한층 잔혹할 때가 너무 많으며, 이러한 형벌은 그것이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할 국가에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옳은 견해이다.

공들여 고안된 형벌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러한 형벌을 고안한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더 끔찍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데 바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잔혹한 형벌들은 정의보다는 전제정(專制政)에 의해서 창안된 것 같다.

거열형(車裂刑)이 독일에 도입된 때는 무정부적인 정치적 혼란기로서, 당시 권력을 탈취한 자들은 극히 참혹한 고문도구를 통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누구라도 감히 자신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영국에서는 대역죄로 붙잡힌 사람이 있으면 그의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 그 심장으로 죄인의 양쪽 뺨을 때린 다음 심장을 불 속에 던져 태우곤 했다. 하지만 대역죄라는 이 명목은 종종 어떤 행위에 적용되어 왔던가? 내란이 있었을 경우라면 그것은 권력을 빼앗긴 불행한 왕에게 충성했다는 죄였으며, 때로는 승자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죄이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관습은 순화되었다. 사실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내는 형벌이 계속되기는 했어도 그것은 언제나 죄인이 죽은 다음에 시행된 것이다. 형벌의 외관은 참혹했어도 죽음 자체는 온건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죽음이라는 것이 온건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의 이야기지만 말이다.

### III. 이단자(異端者)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몇 가지 교리에 대해 카톨릭 교회와는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들에게 최초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도 바로 전제정치였다. 폭군 막시무스<sup>5)</sup> 이전에는 그

<sup>5)</sup> Magnus Maximus (?~388), 로마 황제(재위 383~388). 스페인 천민 출신으로 브리타니아 주둔 로마군을 지휘했고, 군대에 의해 로마황제로 선포되자 대륙으로 건너와 서부지역 황제 그라티아누스를 죽이고 제위를 찬탈했다. 그는 옛 상관이자 경쟁자인 동부지역 황제 테오도시우스와 협상을 벌여 황제로 인정받고 브리타니아, 갈리아, 스페인을 다스렸으나, 388년 시스키아 부근 전투와 일리리쿰(지금의 서부 유고슬라비아)의 페토비오 전투에서 테오도시우스에게 패배, 붙잡혀 처형당했다. 그는 재위 중 프리스킬리아누스파를 박해했는데, 거기에는 이를 통해 정통적 카톨릭 교회의 옹호자로 인정

리스도교도 황제들 중 그 어떤 이도 단지 논쟁상의 입장을 문제 삼아 사람을 처형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사실 막시무스 황제 주변에서 프리스킬리아누스<sup>6)</sup> 파의 처형을 촉구한 사람은 두 명의 스페인 주교였다. 그렇지만 이 폭군이 주도권을 쥔 교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단자들의 피를 뿌렸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로서는 자신의 처사가 야만적 잔혹성과 정의의 실천 중 어느 편에 속하건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태생인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시기하여 테오도시우스가 통치하던 동로마 제국을 빼앗으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앞서 자신이 서로마 제국의 제위를 찬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테오도시우스는 가혹한 통치로 인해 미움 받았으나, 신앙심을 능란하게 활용함으로써 카톨릭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 있었다.<sup>7)</sup> 막시무스는 자신도 그와 같은 종교적 열의를 과시해서 스페인의 주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그는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로마의 전통 종교인 다신교에 대해서도 역시 영합적 태도를 취했다. 당시 로마제국의 황제 자리를 바라거나 손에 넣은 자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그 역시 무자비한 것 못지않게 위선적이기도 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 거대한 세계제국이 통치되던 방식은 오늘날의 동(東)알제<sup>8)</sup>에서 보듯이 황제를 옹립하거나 갈아치우는 일이 군인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 군인들이 황제로 내세우던 인물은 대체로 변방 이민족 출신이었다. 당시 테오도시우스는 다른 이민족인 스키

받음으로써, 이 공적을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한다.

- 6) Priscillianus (340?~385), 초기 그리스도교의 주교로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이단자로 기록되고 있다. 그를 추종하는 프리스킬리아누스파는 6세기까지 존속했다. 프리스킬리아누스가 주장한 교리는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이원론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영지주의(靈智主義)나 마니교와 비슷했다. 엄격한 금욕주의자였던 그는 천사와 인간의 영혼은 신에게서 나왔으나 육체는 악마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죄에 대한 형벌로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결합되었다는 등 많은 비정통교리를 가르쳤는데, 이런 교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정통교리인 삼위일체설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페인 남, 서부지역에서의 프리스킬리아누스파의 팽창에 불안을 느낀 에메리타의 주교 이다키우스와 오소노바의 주교 이타시우스는 곧 프리스킬리아누스파의 반대세력이 되었다. 이타시우스 주교는 트리어(트레베스)의 황제법정에 가서 로마 황제 마그누스 막시무스를 설득하여 프리스킬리아누스를 심문하도록 했으며, 385년 프리스킬리아누스는 마법과 부도덕성이라는 죄목으로 판결받고 처형되었다.
- 7) Theodocius 1세(347~395, 재위 379~395)는 이교도와 아리우스파 그리스도교를 맹렬히 탄압했다. 그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2차 공의회를 소집했는데, 이는 니케아 공의회(325)에서 채택했던 삼위일체설을 정통 신조로 재확인하기 위해서였다.
- 8) 현재 알제리의 수도. 16세기 초 스페인에서 쫓겨난 무어인이 이 도시로 와서 스페인의 해상무역을 방해하는 해적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 이후 1830년 프랑스에 의해 점령될 때까지 오스만 투르크의 통치 하에 있으면서 해적의 근거지로 알려졌다.

티아<sup>9)</sup>인들을 동원해 막시무스와 대결했다. 군대를 고트인들로 채운 사람도, 후일 로마를 붕괴시킨 알라리크<sup>10)</sup>를 키운 사람도 바로 테오도시우스였다. 그와 같은 엄청난 혼란기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진영을 공고히 다지는 일이 관건이었다.

테오도시우스의 동맹자인 그라티아누스 황제를 리옹에서 암살한 막시무스는 곧이어 발렌티니아누스 2세<sup>11)</sup>도 제거해버리려는 생각을 품었다. 발렌티니아누스 2세는 로마에서 어린 나이로 그라티아누스의 후계자로 지명된 터였다. 막시무스는 트레베스<sup>12)</sup>에서 갈리아족과 독일 민족을 모아 막강한 군대를 구성했다. 그는 스페인에서도 군인을 징집해 오게 했는데, 당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스페인의 두 주교 이다키우스와 이타시우스가 이 일을 기회로 삼아 막시무스를 찾아와서 프리스킬리아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처벌해줄 것을 부탁했다. 프리스킬리아누스파는 인간의 영혼이 신의 발현이라고 주장했으며, 삼위일체가 세 위격(位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했다. 나아가 이들은 주일을 단식일로 지키는 극도의 불경을 저질렀다. 다신교도이면서도 반쯤은 그리스도교도였던 막시무스는 프리스킬리아누스파의 이러한 입장이 막중한 죄가 된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이다키우스 주교와 이타시우스 주교는 막시무스를 설득하여 프리스킬리아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처형되기에 앞서 심문을 받도록 했다. 이 두 주교는 모든 일이 미리 짜인 대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심문에 참석했으며, 그리하여 신을 찬양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다. 두 주교가 막시무스를 믿음의 수호자로 선언하고 성인의 반열에 올리려 했던 것도 이처럼 자신들의 의도대로 프리스킬리아누스파가 처형당하고 나서였다. 하지만 막시무스는 테오도시우스에게 패하여 그의 발아래에서 살해당하는 바람에 성인품에 오르지 못하고 말았다.

9) 현재 러시아 남부 지방.

10) Alaric (370?~410), 서고트의 족장. 로마군 내 고트족 부대의 지휘관이었다가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후 군대를 떠나 서고트의 초대 왕이 되었다(395). 그는 서고트족의 세력을 확장해나갔으나 자신이 정복한 토지와 물자의 소유 문제에 있어 서부로마 황제인 호노리우스가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자 세 번에 걸쳐 로마를 포위공격했다. 세 번째인 410년의 공격 때는 800년간 외적에게 침입당한 적이 없는 로마를 3일간 약탈했는데, 이 사건은 서로마 제국의 몰락을 상징한다.

11) 그라티아누스의 이복동생이자 공동 황제였다. 그는 당시 어린 나이였으며, 그라티아누스가 막시무스에게 살해당한 후 막시무스와 불완전하나마 평화조약을 맺었다.

12) 트리어. 지금의 독일 남서부 라인란트팔츠 주에 위치한다. BC 15년경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도시로 건설했으며, 3세기에는 제국의 중심지였다. 이후 갈리아와 브리타니아 섬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거주지가 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투르의 주교로서 진정 덕 있는 사람이었던 성 마르티누스가 프리스킬리아누스를 옹호하며 그의 구명을 탄원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위의 두 주교가 자신마저 이단으로 몰아세웠으므로, 성 마르티누스는 트레베스 교회 회의의 심문대 위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투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프리스킬리아누스는 처형된 뒤 자신의 종파로부터 —그로서는 위안을 삼을 만한 일인데— 순교자로 추앙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위한 제전(祭典)을 열었다. 만약 지금까지 프리스킬리아누스파가 존속하고 있었다면 그의 축일도 지켜졌을 것이다.

프리스킬리아누스의 처형은 카톨릭 교회 전체를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게 했다. 하지만 이 일이 선례가 되어 곧 이와 유사한 일이 이어졌고, 정도도 한층 심해졌다. 프리스킬리아누스 추종자들은 양날검으로, 교수대의 밧줄로, 투석(投石)으로 처형당했다. 뛰어난 성품을 지녔던 어떤 젊은 부인은 주일에 단식했다는 죄목으로 보르도에서 투석형을 당했다. 이런 형벌들은 매우 경미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이단자들은 불 속에 던져져서 서서히 고통 받으며 죽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란 내세에서 하나님이 이단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처벌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군주와 군주를 보필하는 신하들은, 최하위 관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세에 행하실 일을 이 세상에서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삼아 사람들은 사방에서 주술사들과 이단자들을 화형대 위에 세웠다. 주술사들은 틀림없는 악마의 부하들로 비쳐졌고, 이단자들은 그러한 주술사들보다도 더 가증스럽고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었다.

1022년 위그 카페의 아들인 로베르 왕<sup>13)</sup>과 그의 왕비 콩스탕스는 오를레앙으로 가서 성당 참사원<sup>14)</sup>들의 화형을 직접 주관한 적이 있는데, 그 성당 참사원들의 이단적 신앙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 알 도리가 없지 않은가? 당시에는 극히 소수의 성직자와 수도사만이 글을 쓸 줄 알았으니 말이다. 확실한 것은 로베르 왕과 왕비가 이 끔찍한 처형 광경을 질리도록 지켜보았다는 사실뿐이다. 처형당한 자들 중에는 콩스탕스 왕비의 고해신부가 포함돼 있었다.

<sup>13)</sup> Robert II (970~1031), 경건왕 로베르(Robert le Pieux)로 알려졌다. 아를르의 콩스탕스는 그의 세 번째 왕비로 후계자 앙리 1세를 낳았다.

<sup>14)</sup> 주교(主教)의 주위에서 교회법(canon)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성직자. 이러한 성직자들이 성당의 참사회를 구성한다.



왕비는 불꽃이 그 고해신부를 집어삼키는 장면을 지켜봄으로써 자신이 그 이단자에게 고해를 했었다는 불행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어떤 일이 거듭 되풀이되면 법이 된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다시 말해 700년도 넘는 세월 동안, 그릇된 견해를 품었다는 죄로 혹은 그렇게 비취진다는 죄로 사람들이 화형대에서 죽임을 당해왔다.

#### IV. 이단의 근절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이단적 견해와 이단파는 구별해야 한다. 다양한 견해들은 이미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부터 있어 왔다.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교인들은 믿음의 여러 항목에 있어서 안티오크<sup>15)</sup>의 그리스도교인들과는 생각이 달랐다. 아카이아<sup>16)</sup>인들은 아시아 대륙에 사는 사람들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차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으므로 대립을 빚어내지 않았다. 따라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견해차 때문에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수의 뜻은 교회들이 서로 다른 교리를 갖는 것을 용인하면서 —자신이 그 모든 교리 속에서 지도자이자 주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무슨 문제겠는가?— 모든 교회가 관용과 자비를 베풀도록 하는 데 있었다. 로마 황제들이 묵인했거나 혹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초기 교회의 온갖 종파들은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상 서로를 박해하거나 추방할 수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단지 논쟁을 벌이는 것뿐이었다. 로마 당국이 그들을 박해할 경우 그들은 한결같이 본원적인 권리를 주장했다. 모든 종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평화롭게 하느님을 섬기도록 내버려두시오. 당신들은 유대인에게 신을 숭배할 자유를 주었으면서 왜 우리들로부터는 그런 자유를 빼앗으려는 겁니까?”

오늘날 갖가지 종파들도 자신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로 항변할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부여해 온 나라의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15) 시리아의 도시. BC 300년경 그리스인이 건설한 도시였으나 BC 64년경 로마에 점령되어 시리아 속주의 수도가 되었다. 47~55년 사도 바울의 전도 근거지였다.

16) 고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의 한 지방.

있는 것이다. “당신네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대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닌 믿음에 따라 신에게 기도를 올리게 내버려두세요. 우리가 품은 견해는 유대교가 그렇듯이 당신네 국가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당신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주시오. 우리가 당신들과 다른 점은 단지 신학상의 아주 미묘한 문제들에 대해 달리 생각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 봉사할 백성들을 당신들 스스로 포기하려 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중시해야 할 점은 우리가 쓸모 있는 일꾼으로서 당신들의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해군으로 복무하고, 땅을 경작한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당신들과 몇 가지 다른 신조(信條)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아니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지 똑같은 교리문답서를 외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단파의 경우는 문제가 전혀 다르다. 어떤 종파가 박해를 받으면 그것은 파당으로 변모한다. 이런 일은 언제나 있어 왔고 또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다. 박해받은 자들은 서로 뭉치고 서로를 격려한다. 지배적인 종파가 그들을 절멸시키는데 전력할수록 그들은 자기네 당파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 붓는다. 적을 분쇄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궤멸당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부황제 갈레리우스<sup>17)</sup>의 교사에 의해 303년 그리스도교 대박해가 벌어진 이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치세 마지막 2년 동안 일어났던 상황이다. 당시 그리스도교인들은 18년간이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목인 하에 평화를 누려오던 터라 박해로 인해 교파가 소멸되기에는 너무 큰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스도교도들은 콘스탄티우스 1세 클로루스<sup>18)</sup>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의탁하고 그의 아들

<sup>17)</sup> Gaius Galerius Valerius Maximianus (?~311), 미친한 가문 출신이지만 뛰어난 군인이었던 덕분에 293년 로마제국 동부를 다스리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의해 부황제에 임명되었다. 갈레리우스는 철저한 로마 정통 다신교 숭배자로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설득하여 303년 그리스도교에 대한 대박해를 명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퇴위하자 동부제국의 황제(재위 305~311)가 되었고, 이후 무자비한 통치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인두세를 부과하고 그리스도교를 계속 박해했다. 그러나 말년에 중병에 걸린 그는 이를 그리스도교의 신이 내린 보복이라고 여기고, 311년 마지못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칙령을 공포했다.

<sup>18)</sup> Constantius I Chlorus (?~306), 클로루스는 ‘창백한 자’라는 뜻. 서부 로마지역 황제였던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양자로서 그의 부황제(293~295)였다가 305년 황제가 되었고 이듬해 사망했다. 동부 로마지역의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부황제 갈레리우스가 303년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칙령을 발표했을 때 그는 일부러 미온적인 조치로 대응해서 일부 교회를 파괴하기는 했으나 신자들을 처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클로루스가

콘스탄티누스를 위해 싸웠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든 대변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작은 사건들 중에서도 위와 같은 대사건들과 동일한 동인을 가진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로마제국의 대변혁과 유사한 사건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스위스에서도 일어났다. 또한 스페인에서 한때 페르난도와 이사벨<sup>19)</sup>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은 현 스페인 왕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리타니인<sup>20)</sup>과 고트족보다도 앞서서, 심지어 카르타고인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땅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 추방했을 당시, 만약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재화만큼이나 무력까지 갖추고 있었다면, 또한 만약 아랍인들과 제휴할 생각을 했더라면, 이들은 스페인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어떤 종파가 통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경우는 그들이 절망으로 인해 무기를 들었을 때뿐이다. 마호메트 자신이 혁명에 성공한 것도 그가 메카에서 추방당했고 또 이 도시에서 현상금 걸린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종파가 국가를 전복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오늘날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가 시행하고 있는 현명한 정책을 본받도록 하자.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종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란 그 종파의 지도자들과 신봉자들을 가차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사람도 남김 없이 죽이거나, 아니면 그 종파를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 경우 그들 모두를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 첫 번째 방식은 잔인하고 두 번째 방식은 현명하다.

모든 백성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복속하게 하라. 웨이커 교도들과 터

죽자 그의 군대는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를 황제로 선포했다.

19) 스페인을 단일 국가로 만들고 근대 제국주의 팽창기를 연 페르난도 2세(1452~1516)와 이사벨 1세(1451~1504)를 말한다. 1469년 아라곤의 왕 페르난도는 카스티야의 공주 이사벨과 결혼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두 왕국을 공동 통치하고, 스페인 내에 남은 이슬람교도의 마지막 거점인 그라나다 왕국을 정복함으로써 스페인의 영구적인 통일을 이룩하였다. 특히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스페인의 해외 식민제국시대가 개막되었다. 두 사람은 신앙에 관한 한 대단히 경건했고 정통주의를 고수해서, 교황 알렉산데르 6세로부터 ‘카톨릭 부부왕’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스페인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카톨릭 이외의 종교를 금지했고, 이를 위해 1480년 안달루시아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했다. 여기서 볼테르가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 추방 사건(1492)이란 종교재판소를 통해 비(非)그리스도교도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개종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추방된 일을 말한다. 유대인 추방은 당시 종교적 정치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지 않았으나, 경제적인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다.

20) 중세에 스페인을 점령한 이슬람교도, 무어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키인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쫓아 당신의 법 아래에서 살게 하라. 종교는 신과 인간 사이의 문제이다. 반면 세속의 법은 통치자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문제이다.

## V. 신성모독에 대하여

높은 덕성으로 성자의 반열에 오른 프랑스의 왕 루이 9세<sup>21)</sup>가 우선적으로 한 일은 신성모독자를 단죄하는 법을 만든 것이다. 왕은 그들을 처벌할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 냈는데, 그것은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혀를 꿰는 형벌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탈리온<sup>22)</sup>으로서, 죄를 저지른 신체 부위에 형벌을 내린다는 처형 방식이다. 그러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신성모독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다.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sela’와 ‘vah’라는 말처럼 어떤 표현들은 엄밀히 말해 허사에 불과한 것으로, 화가 났을 때나 기쁠 때, 혹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면서 언제든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 라틴어의 ‘pol’과 ‘edepol’ (‘정말이지’, ‘맹세코’)도 그렇다. 또한 ‘여러 불멸의 신들의 이름으로(per deos immortales)’라는 표현은 불멸의 신들에게 실제로 맹세한다는 의미 없이 어느 경우에도 쓰이곤 했다.

지킬 생각도 의무도 없는 선서, 불경한 언사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말들은 대개는 모호한 표현들인 탓에 자의적으로 해석되곤 한다. 이러한 말들에 대한 처벌법은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말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지 않은가? 뛰어난 성서해석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법조항은 서약을 어기지 말라는 뜻이다. 이 구절에서 ‘헛되이’ ‘쓸데없이’라고 옮겨지는 ‘shavé’라는 단어가 정확히 풀이하면 ‘서약의 위반’을 의미하는

21) Louis IX (1214~1270), 聖루이(Saint Louis)왕으로 불린다(재위 1226~1270). 존엄왕 필립의 뒤를 이은 루이 8세의 아들로서, 특히 깊은 신앙심과 높은 덕망으로 서방 그리스도교 전역에서 존경을 받았다. 교회의 보호자였고 성직자들의 벗이었던 그는 1248~1250의 십자군 원정에 이어 1270년 또 한 차례 성지회복 원정에 나섰다. 도중에서 사망했다. 로마 교황청이 판정을 내리기도 전에 백성들이 그를 성인으로 기렸으며, 로마는 1297년 그를 성인으로 추대했다.

22) talion,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도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탈리오 법칙), 혹은 그러한 법칙에 따른 형벌을 말한다.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으로 불리기도 한다.

만큼 그들의 해석은 옳다. 그런데 ‘카데디스cadédis’, ‘상블뢰sangbleu’, ‘방트르블뢰ventrebleu’, ‘코르블뢰corbleu’<sup>23)</sup>처럼 가볍게 쓰이는 말들의 경우, 이 표현들이 서약의 위반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무엇인가를 맹세할 때면 신(神)이 살아 있음을 내세우곤 했다. 이럴 때 하던 말이 ‘비비트 도미누스*Vivit Dominus*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로써, 이것은 누구나 쉽게 쓰던 표현이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신을 증인으로 삼아 신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일 이외에는, 신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1181년 필립 오귀스트<sup>24)</sup>는 자신의 영지 내에서 ‘테트블뢰têtebleu’, ‘방트르블뢰’, ‘코르블뢰’, ‘상블뢰’라는 말을 쓴 귀족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똑같은 죄목의 평민들은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명령에서 귀족들에 대한 부분은 유치하고 평민들에 대한 부분은 가증스러웠다. 시민들을 처형할 때는 익사시키면서, 그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귀족이라면 당시 돈으로 2, 3수를 치르고 속죄하게 했던 것은 자연의 도리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그런 이유로 이 해괴한 법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특히 필립 오귀스트가 교황 켈레스티누스 3세로부터 파문당하고, 그의 왕국에 성무 집행 금지령이 내려졌을<sup>25)</sup> 동안 만들어진 다른 많은 법들이 실행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성(聖) 루이왕은 종교적 열정에 이끌린 나머지 무차별적으로 명령하기를, 누구

23) 프랑스어에서 이 표현들은 분개나 욕설, 못마땅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로써, 단어 가운데 신(神) *dieu > bleu*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가스코뉴 지방어인 ‘카데디스*cadédis*’ 혹은 ‘카데디우*cadédiou*’는 ‘이거 참’, ‘제기랄’의 의미이며, 같은 뜻의 ‘sangbleu’는 ‘하느님의 피(血)로써*par le sang de Dieu*’, ‘*par le sang bleu*’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ventrebleu’, ‘corbleu (cordieu)’ 역시 ‘젠장’, ‘제기랄’, ‘빌어먹을’의 뜻이다.

24) Philippe Auguste (존엄왕 필립), 필립 2세(1165~1223)의 별칭. 중세 프랑스를 통치한 카페 왕조의 왕들 가운데 최초의 위대한 왕으로서, 프랑스가 강대국으로 성장할 토대를 놓았다(재위 1179~1223).

25) 필립 오귀스트는 재위 중 로마 교황청과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는 첫 아내가 죽은 뒤 1193년 덴마크왕 크누트 4세의 누이인 잉게보르그와 결혼했는데, 이튿날 개인적 이유로 잉게보르그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왕은 주교회의에서 결혼무효선언을 얻어냈고, 1196년 아그네스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덴마크는 로마에 이의를 제기했고 1195년 교황 켈레스티누스 3세는 앞서 내린 결혼무효선언을 취소했다. 그러나 켈레스티누스 3세는 강제력을 발동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1198). 후임 교황인 인노켄티우스 3세는 더 엄격해서 1200년 1월 프랑스에 성무 집행 금지령을 내렸고, 필립은 1200년 9월 교황에 굴복했다. 그는 잉게보르그와 화해하는 척했으나, 실제로는 1213년까지 그녀를 거의 언급 상태에 두었다고 한다.

든지 위에서 말한 불경한 표현들을 입에 담은 사람이 있으면 그의 혀를 쇠꼬챙이에 꿰거나 윗입술을 자르게 했다. 파리의 한 대(大)부르주아가 이 명령에 따라 혀를 잃었다. 이 부르주아는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황은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과중하다며 성 루이왕을 강하게 질책했다. 왕은 그 후로는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 교황들이 이런 종류의 조정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까지 국왕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더라면 인간 사회로 보아서는 더 나은 일이 되었을 것이다.

1666년 루이 14세가 내린 칙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느님과 거룩한 성모, 성자들의 신성한 이름을 욕되게 한 자는 아래와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초범일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같은 죄를 두 번, 세 번, 네 번 저질렀을 경우 각각 두 배, 세 배, 네 배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죄를 다섯 번 저질렀을 경우는 죄인에게 쇠고리를 채워 말뚝에 매달며, 여섯 번째는 죄인을 매달아 공시함과 동시에 윗입술을 자른다. 이와 같은 죄를 일곱 번 저지른 죄인은 그에 합당한 벌로써 혀를 자른다.”

이 법은 현명하고 인정이 있다. 같은 죄를 여섯 번이나 되풀이 저지른 다음에야 비로소 잔인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형법 관례 —그 판결들을 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속에서,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부르는, 좀 더 심각한 불경죄로 지적되는 범죄는 교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이다. 또한 어떤 실정법도 화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의 형법 관례들과 법은, 그런 미치광이 짓을 예상할 수 없어서이건, 혹은 그런 것들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이건, 여하 간에 무엇이 공공연한 신성모독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까다로운 문제에 부딪친 경우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연령을 고려하고, 이들의 죄질을 가늠하며, 이들이 어느 정도의 악의를 품었는지, 어느 정도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이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법이 이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내리라고 명시적으로 밝혀놓지 않은 이상, 자신이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재판관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데 법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재판관은, 그 역시 인간인 이유로, 주저하지 말고 가장 가벼운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사람은 젊은 탕아들뿐이다. 그런 자들을 자신의 형제를 죽인 자들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혹하게 벌할 것인가? 그들의 나이를 참작하라. 그 나이에 자기 소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들이 불리한 거래의 결과를 예견할 만큼 충분히 사고가 성숙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정신이 미숙했기 때문에 자신이 범하는 불경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고 견잡을 수 없이 휩쓸려 들어갔던 것이다.

분별을 잃고 성화(聖畵)를 모독했으나, 그것을 흠치지 않는 한 방종한 한 젊은이가 있다고 하자. 이 젊은이에게 브랭빌리에<sup>26)</sup>에게 적용한 것과 같은 방식의 형벌을 내릴 것인가? 자기 아버지와 가족을 독살한 이 죄인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이 불행한 젊은이를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그에게 극형을 내리려면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하리라! 그는 마땅히 본보기로서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가 잔인한 고문을 받고 끔찍하게 처형되는 것까지 마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가 신을 모독했다고 치자.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 또 아주 심각한 모독이었다. 그럴 경우 하느님 자신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도 바로 하느님이 행할 방식대로 하면 된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느님은 그를 용서할 것이다. 그에게 속죄의 기회가 될 벌을 주라.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

저 유명한 몽테스키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을 숭배해야 한다. 그러나 신을 대신해 복수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공공질서 유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범죄와 형벌』의 현명한 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지고의 존재가 당한 모욕을 한 마리 벌레가 대신해서 복수하겠다고 마음먹는 일이 어처구니없다는 뜻이다. 마을의 치안판사도 시(市)법원의 재판관도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닌 것이다.

<sup>26)</sup> Marie-Madeleine d'Aubray. Marquise de Brinvilliers (1630~1676), 루이14세의 통치기에 있었던 유명한 독살 사건의 살인범. 파리 민정관 도브레의 딸로서 1651년 군장교 드 브랭빌리에와 결혼했다. 쾌락을 탐하는 성향이었던 그녀는 남편의 친구 생트 크루아의 정부가 되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생트 크루아를 1663년 바스티유 감옥에 가두었다. 생트 크루아가 감옥에서 풀려나자 브랭빌리에에는 그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할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왕의 약제사 한 명에게 부탁해 독약을 구해다가 병원 환자에게 약의 효능을 시험한 다음, 결국 아버지를 독살하고(1666), 오빠 2명도 죽였으나(1670), 남편을 죽이는 데는 실패했다. 이 범죄 사실은 1672년 생트 크루아가 죽고 난 후에 발각되었다. 그녀는 달아났으나 결국 붙잡혀 1676년 파리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 VI. 신성모독에 대해 로마인들이 보여준 관용

유럽의 전역사를 통해 볼 때, 교양 있는 신사들의 개종을 다루는 방식은 대체로 아주 큰 편차를 보여준다. 그 한쪽 끝에는 로마인의 법이 있고 다른 끝에는 그들의 뒤를 이은 변방족들의 —마치 찬란한 도시가 붕괴된 이후 그 폐허 위를 뒤덮은 쓰레기더미와도 같은— 수많은 야만적 관계가 있다.

물론 로마의 원로원도 지고(至高)의 신에 대해 우리만큼이나 깊은 존중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존중심은 하위 서열의 불멸의 신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하위 신들은 영원한 지배자에 종속된 존재들로서 우리의 성인(聖人)들에 비길 수 있다.

최고의 신 주피터에 의하여...

위의 구절은 로마인들이 흔히 쓰던 말이었다. 플리니우스<sup>27)</sup>가 선량한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바친 송사(頌辭)에서 뚜렷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은 로마인들이 장사나 연설을 시작할 때면 처음에 반드시 신에 대한 기원을 올렸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키케로와 티투스 리비우스도 증명하고 있다. 로마인들보다 종교적 심성이 더 강한 민족은 없었다. 그렇지만 로마인들은 또한 현명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누군가 공론(空論)을 늘어놓거나 철학적인 견해를 펼친다고 해서 옹졸하게 그것을 트집 잡아 별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점술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 예를 들어 키케로처럼 그 자신이 점을 치면서도<sup>28)</sup> 점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잔인한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 카이사르는 원로원에서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를 신들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결코 인간을 별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런 인물들에게도 야만적 형벌이 부과된 적은 없었다.

이미 수없이 지적한 이야기지만, 로마 원로원은 다음과 같은 노래가 로마의 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허용했다.

<sup>27)</sup> Plinius (61~113), 『박물지』를 쓴 대(大) 플리니우스의 조카로 소(小) 플리니우스로 불린다. 그가 로마의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과 찬사문을 모은 서한집이 전해지고 있다. 그의 서한문은 행정문제뿐 아니라 역사와 당대 사건에 대한 평가 등의 다양한 주제를 문학적 감수성을 섞어 펼쳐 보이고 있어서, 로마 제국 전성기의 공적, 사적인 모습을 재구성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sup>28)</sup>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웅변가, 법률가, 시인, 철학자였던 키케로(BC106~43)는 점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서 『점에 관하여』(De Divinatione, BC44년경)라는 저술을 남겼다. 이 저술은 고대 점술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죽음 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죽음조차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당신은 묻는  
가, 죽은 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태어나기 전에 머물렀던 바로 그 자리로 간다  
네.” 이 구절은 『트로이아의 여인들*Troïades*』<sup>29)</sup>에서 극중의 합창대가 노래한 것  
이다.

당시에 만약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위의 경우가 그런 신성모독  
에 해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엔니우스<sup>30)</sup>에서 아우소니우스<sup>31)</sup>에 이르기까지, 이  
들이 아무리 종교의식을 지켰다고는 해도 신성모독을 비켜갈 수는 없었을 것이  
다. 그렇다면 로마의 원로원이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러한 신성모독 행위들이 국가의 통치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어떠한 제도, 어떠한 종교적 의식도 그런 일들 때문에 손상을 입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서 로마인들의 치안이 허약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  
은 테오도시우스 2세<sup>32)</sup> 시절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거의 전 지역에서 여전히 지  
배자로 군림했었다.

다른 데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로마 원로원의 좌우명은 “*Deorum offensae diis  
curae* - 신들에 대한 모독은 오직 신들만이 상관할 일이다”라는 것이었다. 로마  
에서는 지극히 지혜로운 제도에 따라 원로원 위원들이 종교의 수장 자리를 차지  
하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제관(祭官)들이 동업자 조합을 결성하여 하늘을 대  
신해 복수한다는 구실 하에 자기네 분풀이를 해달라고 원로원 위원들에게 압력  
을 넣을 염려가 없었다. 원로원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 즉, “불경한 자들을  
처형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자신이 불경한 자들로 낙인찍힐지 모르오, 잔  
혹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제관들에게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신앙이 돈독하다는 것  
을 보여줍시다” 같은 말들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받드는 종교는 고대 로마인의 종교보다 훨씬 거룩한 것이다. 우리들 사  
회에서 저질러지는 불경은 그들 사회에서보다 훨씬 큰 범죄이다. 그 불경은 하느  
님이 벌하시리라. 인간이 할 일은 이러한 불경이 야기한 공공의 무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벌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이러한

29)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30) Quintus Ennius (BC239~169), 고대 로마 초기의 시인. 라틴 문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31) Decimus Magnus Ausonius (310~385), 갈리아 출신 시인으로, 주로 고향의 시골 풍경을  
그리는 작품을 썼다.

32) Theodocius II (401~450), 동로마황제(재위 408~450). 312년 이후로 제정된 법령들을  
성문화한 테오도시우스 법전이 이 황제 통치기에 편찬되었다.

불경죄를 마치 존속살해죄처럼 다루어야 할 것인가? 불경한 행동이 있었다 해도 손수건 한 장 도둑맞지 않았고, 그 누구도 모욕 받은 적이 없으며, 종교의 전례(典禮)가 훼손당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당크르 원수(元帥)<sup>33</sup>가 보름달이 떴을 때 흰 수탉을 죽이도록 했다 치자. 그렇다고 당크르 원수를 화형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 VII. 포교(布教)에 관한 범죄, 그리고 앙트완 사건에 대하여

몇몇 지방에서는 칼뱅파의 한 설교사가 신도들에게 비밀리에 전도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그를 사형에 처한다. 또한 이 목사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한 사람들은 종신노역형에 처해진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포교하러 온 예수회 신부를 교수형에 처하는 곳들도 있다. 한편에서는 신교 설교사를,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회 신부를 각각 교수형에 처하면서 사람들은 하느님을 대신해 복수하고자 한 것일까? 양쪽 모두 복음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계율 즉, “누구라도 교회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교도와 세리(稅吏) 같이 여겨라”<sup>34</sup>라는 계율에 의거했던 것이리라. 하지만 복음서에는 이 이교도와 세리를 죽이라는 말은 없다.

신교 설교사를 처형할 때나 예수회 신부를 처형할 때 사람들이 그 처형의 근거로 삼은 것이 신명기의 다음과 같은 구절일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예언자가 나서서 자신의 예언이 들어맞음을 보이며 네게 말하기를, 이방의 신들을 따르자 하고(…) 만약 네 형제나 아들, 혹은 사랑하는 아내나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가 말하기를, 이방의 신들을 섬기자 하면, 주저 없이 그를 죽여라. 네가 가장 먼저

<sup>33</sup>) le Maréchal d'Ancre (1575~1617), 본명은 콘치노 콘치니(Concino Concini), 루이 13세 통치 초기 7년간 프랑스 정부를 좌우했던 이탈리아 출신 정치가. 마리 드 메디치가 앙리 4세와 결혼하기 위해 프랑스로 올 때 수행원으로 따라왔고, 1601년에는 왕비와 함께 자란 레오노라 갈리가이와 결혼했다. 앙리 4세가 암살된 후, 섭정이 된 마리 드 메디치가 아내 갈리가이를 총애하는 것을 기회로 권력을 남용하고 탐욕을 부렸다. 그는 전투에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613년 육군원수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반감을 품은 젊은 왕과 귀족들의 음모로 왕실 호위대에 저격당했고, 군중들은 그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의 아내는 마법을 행했다는 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참수당해 불태워졌다.

<sup>34</sup>) 마태복음 18장 17절.

나서서 그를 쳐라. 그러면 못 백성이 너를 따르리라.”<sup>35)</sup> 하지만 예수회 신부도 칼뱅과 설교사도 “자, 이방의 신들을 따릅시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 않은가?

뒤부르 판사<sup>36)</sup>, 주교좌 성당 참사원으로서 흔히 칼뱅이라고 일컬어지는 장 코뱅<sup>37)</sup>, 스페인의 의사 세르베투스<sup>38)</sup>, 칼라브로아 장틸리스, 이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지만 미나르 재판장은 뒤부르 판사를 장대에 매달게 했다. 그러자 뒤부르 판사의 친구들은 사람을 시켜 미나르를 살해했다. 또한 장 칼뱅은 의사 세르베를 서서히 불에 타 죽게 했고, 칼라브로아 장틸리스의 목을 자르는데 힘을 보탤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았다. 장 칼뱅의 계승자들은 앙트완을 화형시켰다. 과연 이성이, 신앙심이, 정의가 이 모든 살해 행위들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앙트완 사건은 가장 어처구니없는 일 중의 하나로서, 그 기록은 광기(狂氣)의 역사 속에서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 내가 아주 흥미로운 어떤 문서—이 문서의 일부는 자콥 스펜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에서 읽은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앙트완은 로렌 지방의 브리에 시(市)에서 태어났다. 양친이 카톨릭 신자였던 그는 풍타무송 시에 있는 예수회 학교에서 공부했다. 앙트완은 메즈에서 신교 설교사인 페리를 만났고, 그에게 이끌려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게 되었다. 앙트완이 낭시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를 이단자로 몰아 종교 재판에 회부했다. 만약 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지 못했더라면 그는 교수형을 당했을 것이다. 스당으로 피신한 앙트완은 이번에는 카톨릭교도라는 의심을 받았고, 살해될 위험에 직면했다.

기이한 운명으로 인해 신교도 편에서도 카톨릭 편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게 된 그는 베니스로 가서 유대교도가 되었다. 그는 유대교가 유일하게 참된 종교라고 진심으로 믿었으며,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 옛날 유대교가 참된 종교였던 이상, 오늘날도 여전히 참된 종교일 거

<sup>35)</sup> 신명기 13장.

<sup>36)</sup> A. Dubourg (1520~1558), 앙리 2세 당시의 프로테스탄트 박해에 항의했던 법관으로, 그 역시 프로테스탄트들처럼 장대에 매달려 화형당했다.

<sup>37)</sup> 칼뱅(칼빈)의 원래 이름은 코뱅(Cauvin)이었다. 여기서 볼테르는 잠시 착각을 일으켰는데, 주교의 비서였고 대성당 참사회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사람은 칼뱅의 부친 제라르 코뱅이다.

<sup>38)</sup> M. Servetus (1509~1553), 스페인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의사였다.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로서, 삼위일체론을 공격하는 등 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의 주장은 칼뱅을 분개시켰고, 그리하여 1553년 그가 제네바에 왔을 때 칼뱅은 그를 체포하여 이단으로 고발, 화형시켰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당국과 마찰을 빚을 것이 두려워 그에게 할례를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할례를 못 받았어도 앙트완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다. 그는 자신이 유대교 신자임을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았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던 까닭에 신교 설교사의 신분으로 제네바에 갔을 때는 그곳 콜레주의 수석 교사가 되었고, 마침내 목사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다.

자신이 설교해야 하는 칼뱅과 교리와 자신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모세교 사이에서 끊임없이 느껴야 하는 마음의 갈등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었다.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혹심하게 병을 앓았다. 고통을 못이긴 나머지 그는 자신이 유대교인이라고 외쳤다. 목사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에게 자신의 행동을 누우칠 것을 종용했다. 그는 목사들을 향해 대답하기를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을 숭배한다고 했다. 그가 한 말에 따르면, 하느님이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하느님은 나중에 폐할 율법이라면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새겨 인간에게 직접 내려주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반박하는 말을 했다. 그러나 곧 자신이 한 말을 취소했고, 단죄를 모면하기 위해 신앙고백서를 썼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쓰긴 했어도,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불행한 확신으로 인해 차마 그 아래 서명할 수 없었다. 시 위원회는 신교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이 불행한 자의 처벌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목사들 중 소수는 주장하기를, 그 죄인을 가없게 여겨야 하며, 그를 벌하기보다는 그의 머릿속에 파고 든 병을 치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대다수 목사는 그가 화형당해 마땅하다고 판결했고, 그리하여 앙트완은 화형을 당했다. 이 일이 있었던 해는 1632년이다. 이런 종류의 판결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쳐 이성과 도덕이 진보해야만 했다.

## VIII. 시몽 모랭 사건

시몽 모랭의 비극적인 종말은 앙트완의 죽음만큼이나 끔찍하다. 이 불행한 인물은 1663년 파리에서 화형당했는데, 그것은 바로 화려한 궁정 축제들이 벌어지던 도중의 일로서, 그 시기는 연애와 쾌락으로 빛나던, 심지어 가장 방탕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였다. 그는 자신이 하느님을 보았다고 믿고 있던 미치광이였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그는 자신이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스

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현이라고 주장했다.

파리 고등법원은 매우 신중한 판결을 내려 시몽 모랭을 보호소에 감금했다. 우연하게도 같은 수용시설에는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광인이 있었는데, 그의 광란은 소문이 자자했다. 시몽 모랭은 동료의 광증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신의 비정상적인 언행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한동안 그는 이성을 되찾은 듯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누우치고 있음을 재판관들에게 보였고, 그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석방되었다.

얼마 후 그의 광증이 도졌다. 그는 스스로를 신성시하며 교리를 세웠다. 불운한 운명으로 인해 그는 생 소를랭 데마레를 만나게 되었다. 데마레는 몇 달 동안 모랭과 친구로 지냈으나, 동류(同類) 간의 경쟁의식 때문에 곧 그의 가장 가혹한 박해자가 되었다.

이 데마레라는 인물도 모랭만큼이나 헛소리가 심한 자였다. 사실 이자의 증상이 어리석은 헛소리를 떠들고 다니는 것에 그쳤다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헛소리들은 번역된 성경 시편들과 함께 인쇄된 에리고네<sup>39)</sup>와 마이라의 희비극이었고, 성모 마리아 기도문과 나란히 써놓은 아리온<sup>40)</sup>의 소설과 클로비스의 시였다. 그것은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에 대한 욕설로 장식된 디오니소스 찬가들이었다. 그런데 데마레의 증상은 이런 종류의 광증으로부터 한층 더 심각한 단계로 발전해갔다. 그는 포르 르와얄을 격렬하게 공격했다. 또한 자신이 여인네들을 무신론으로 끌어들이었다고 털어놓은 다음에는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처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하느님이 자신에게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직접 건네 주었으며, 자신은 이 열쇠를 가지고 인류 전체를 교화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54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지휘해서 장세니스트들을 쳐부술 것이라고 했다.

지극히 합당하게 처리하자면 이러한 자는 시몽 모랭과 같은 수용소에 집어넣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인물이 국왕의 고해신부인 예수회 신부 하나의 신임을 살줄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데마레는 아나를 설복하여 그 가엾

<sup>39)</sup>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로 이카리오스의 딸. 신화에 따르면 이카리오스는 디오니소스 신에게 술 만드는 법을 배워서 이 술을 목동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어 취하게 했다. 다른 목동들이 취한 동료들을 보고 이들이 독살된 것으로 오해하고, 이카리오스를 죽여 나무 밑에 묻어버렸다. 에리고네는 자신의 개 마이라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고, 그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다. 분노한 디오니소스는 역병을 땅에 내려 저주하였으며, 아테네의 모든 처녀들이 미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한다.

<sup>40)</sup> Arion, 레스보스섬의 반(半)전설적인 시인. 음악에 문학 형식을 부여하여 주신찬가(酒神讚歌,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부른 합창시)를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은 시몽 모랭이 장세니즘만큼이나 위험한 교파를 세우려 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파렴치하게도 그는 스스로 밀고자가 되었고, 그리하여 마침내 파리시(市)의 형사 재판관으로부터 자신의 불행한 경쟁자에 대한 체포령을 얻어냈다. 그 결과를 구태여 밝혀야만 할까? 시몽 모랭에게는 산 채로 불태워지는 형벌이 선고되었다.

그가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사람들은 그가 한쪽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종이는 그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참회문이었다. 이러한 참회문을 쓴 이상 그는 용서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재확인되었고, 그는 무자비하게 처형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낀다. 더구나 이처럼 통탄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곳도 바로 이 나라가 아니었던가? 어디서나 사람들은 서로가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그리고는 서로를 박해하여 죽이곤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대를 품음으로써 인류를 위한 위안을 삼는 수밖에 없다. 즉 그와 같은 끔찍한 시절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는 기대 말이다.

## IX. 마녀들에 대하여

1749년 주교구(主敎區) 부르즈부르크에서 한 여인이 마녀인 것이 입증되어 화형을 당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스스로 교화되었노라고 그리고 미신들을 타파했노라고 자부하던,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들의 이성을 양양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마법이 있다고 믿고, 가엾은 여인들을 마녀로 몰아 불태워 죽이다니. 또한 이런 일이 그들의 이성이 소위 혁신을 이룩했다는 때로부터 100년도 넘는 후에 일어나다니 과연 가능한 일인가.

1652년 제네바 관할 지역 내의 작은 마을에서 미셀 쇼드롱이라고 하는 한 시골 소녀가 마을을 빠져나와 악마를 만났다. 악마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그녀로부터 자신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윗입술과 오른쪽 젖가슴에 표식을 새겼는데, 이것은 악마가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에게 찰흙없이 남겨 놓는 표식이었다. 이 악마의 낙인이란 작은 수결(手決)로서 이것이 새겨진 살갓은 감각이 없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당대의 모든 악마 연구 법학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악마는 미셀 쇼드롱에게 두 명의 소녀를 피어오라고 했다. 그녀는 자기 주인의 말에 어김없이 복종했다. 두 소녀의 부모들이 마법을 걸었다는 죄로 그녀를 법에 고발했다. 소녀들은 심문을 받았고, 죄인과 대면하게 되었다. 그들이 증언하기를 자신들의 몸 어딘가에 마치 개미들이 기어 다니는 듯 계속해서 스멀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따라서 자신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었다. 의사들이, 혹은 적어도 당시에 의사로 대접받던 사람들이 불려왔다. 의사들이 이들 소녀를 진찰했다. 그들은 미셀의 몸에서 악마의 낙인을 찾아냈다. 조서에는 이 자국이 악마의 표식이라고 써어 있다. 의사들이 이 자국이 나있는 소녀의 살갓을 긴 바늘로 찔렀다. 이것만 해도 이미 고통스러운 고문이었다. 바늘을 찔러 넣은 자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미셀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이 점만으로도 그녀의 살갓에 나 있는 자국이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악마의 표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재판관들은 미셀이 마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없자 그녀를 심문했다. 이러한 심문은 재판관들이 원하는 소위 확실한 증거들을 어김없이 만들어내는 법이다. 다시 말해 이 불행한 소녀는 잔인한 고문을 못 이겨 결국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의사들이 그녀의 몸에서 다시 악마의 표식을 찾아내기 위해 동원되었다. 그들은 소녀의 한쪽 엉덩이에서 작은 검은 자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악마의 표식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 점 위로 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심문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했던 나머지 이 가없는 소녀는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바늘의 감각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녀에게서는 비명조차 새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죄가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기풍이 점차 순화되기 시작하던 터라 그녀는 우선 교수형에 처해진 다음에 불 속에 던져졌다.

그리스도교의 품안에 있는 유럽의 모든 법정에서 이런 유의 판결이 울려 퍼지곤 했다. 이단자들에게 그랬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도처에서 마녀들을 화형시키기 위한 장작더미에 불꽃이 타올랐다. 사람들이 터키인들에 대해 퍼붓던 가장 큰 비난은 그들 가운데는 마녀도 없고 마귀에 들린 자도 없다는 점이었다. 어떤 종교에 마귀 들린 자가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가 가짜라는 확실한 증거로 보였던 것이다.

공공의 이익과 인도주의, 참된 종교를 열렬히 소망하는 어떤 사람이 그 죄 없는 소녀를 옹호하여 쓴 글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종교 재판들은 10만 명 이상의

소위 마녀들을 사형에 처했다고 한다. 이 법적인 학살에다 그보다 한층 더 많이 희생당해온 이단자들의 수를 합해 볼 때, 유럽은 거대한 처형대처럼 보일 따름이다. 재판관과 악덕 경찰들, 구경꾼들이 빙 둘러싼 가운데 사형 집행인들과 희생자들이 가득 올라선 처형대 말이다.

## X. 사형(死刑)에 대하여

오래 전에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적이 있다. 한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형벌이라면 그 사회에 유용해야만 한다, 라고. 스무 명의 기운 센 도둑이 있다고 하자. 이들에게 평생 동안 공공 노역에 종사하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벌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게 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반면 그들을 사형에 처한다면 고작 사형집행인에게나 보수가 돌아갈 뿐, 나머지 국민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영국에서는 도둑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나라는 절도 죄인들을 식민지로 유배시킨다. 광대한 러시아 왕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전제 군주 엘리자베스 치하에서는 단 한 명의 죄인도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다. 그 뒤를 이은 캐더린 2세도 탁월한 명민함으로 엘리자베스 여제가 세운 원칙을 따랐다. 이와 같은 온정이 베풀어졌을 때 범죄는 결코 증가하지 않았으며, 또한 시베리아로 유배당한 죄인들은 그곳에서 대개의 경우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갔다. 영국의 식민지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좋은 변화는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유배당한 죄수들은 살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악에 빠질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직한 인간이 될 것이다. 익히 아는 바이지만 시골에서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축제가 지나치게 빈번히 벌어지는 곳은 예외인데, 축제는 인간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게 하고 방탕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로마에서 시민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뿐이었다. 우리의 법을 최초로 세웠던 우리의 스승 로마인들은 동포의 피를 귀하게 여겼다. 우리는 우리 동포의 피를 함부로 뿌린다.



법에 극형의 적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재판관들이 사형을 선고하는 일이 허용되는가, 라는 까다롭고 유쾌하지 못한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헨리 6세의 조정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가 공식적으로 토의되었고, 그 결과 헨리 6세는 재판관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범죄란 예기치 않게 일어나고,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특이한 상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특별한 사례가 생겼을 때의 판결을 법을 건너뛰어 재판관들의 신중성에 맡겨온 나라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한 피고인을 법에 의거하지 않고도 사형시키는 일이 법적으로 용인될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이란 법보다 강한 이상, 그 인정의 이름으로 법에 의해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줄 명분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심판의 검(劍)은 우리 손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칼날을 날카롭게 베틀기보다 무디게 만들어야 한다. 왕들 앞에 나아갈 때 검을 칼집에 넣는 것은 그것을 빼지 말라는 경고이다.

우리는 즐겨 피를 뿌려온 재판관들을 보아왔다. 영국의 제프리스<sup>41)</sup> 같은 인물이 그랬다. 그런 경우로 프랑스에서는 ‘목 절단기’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어떤 이가 있었다. 이런 인물들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형집행관의 천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 XI. 형벌의 집행에 대하여

저 먼 나라 중국의 법률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신중하게 행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제국에 재판정이 설치된 것은 이미 4천 년 전부터이다. 또한 그 4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제국에서는 변방의 한 촌부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 없이 처형된 적은 없었다. 즉 소송 내용을 황제에게 보고하면,

<sup>41)</sup> George Jeffreys (1645~1689), 무자비함과 타락으로 악명 높았던 영국의 재판관. 그는 타이투스 오츠가 허구적인 ‘카톨릭 음모사건’을 폭로해서 런던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동안 음모가담 혐의자들의 재판에 검사와 판사로 참여하여 피고들을 잔인하게 취급함으로써 악명을 샀다. 이후 그는 1685년 몬머스 공작이 일으킨 반란이 실패하고 반란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열린 ‘피의 재판’을 주재하면서 반란군들을 잔인하게 기소하고 150~200여 명을 처형했으며 수백 명을 식민지 노예로 팔아버렸다. 또한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재산을 착복했다고 한다.

황제는 재판관 한 명으로 하여금 그것을 세 번 검토하게 했다. 그런 다음 황제는 사형 판결에 서명하거나 형벌을 변경했고, 때로는 완전 사면을 베풀기도 했다<sup>42)</sup>.

이런 예들을 먼 곳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유럽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영국에서는 판결문에 반드시 왕의 서명을 받은 다음에야 죄인을 처형할 수 있었다. 독일과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프랑스에도 그런 관행이 있었으니, 문명화된 모든 민족은 그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국왕의 통치가 미처 미치지 못하는 데서 판결이 이루어질 때는 음모와 편견, 무지가 작용할 수 있다. 궁정이 이런 자갈한 술책들을 모르고 넘어가는 이상 그것들에 대해 손 써볼 도리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궁정에는 더 중요한 관심거리들이 쌓여 있는 것이다. 최고법원은 이런 일들을 다루는 데 있어 훨씬 익숙하며, 또한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최고법원은 대개 모든 것을 큰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비교적 지혜롭고 신중하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사법기관이 엄격한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최고법원이 지방의 하급 법원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하급 법원이 법률에 따라 판결했는지 법조문의 자구에 얽매인 나머지 그 결과가 가혹할 경우, 상급법원은 그 형벌을 완화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법의 기본적 취지, 즉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그래야 할 명백한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 XII. 고문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폭력이나 배신이라는 침해 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그 희생자가 될 수도 있을 범죄들을 미워한다. 사람들은 합심해서 범죄의 주범과 공범의 처벌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고인들로부터 자

42) 저자 주: 『법의 정신』(Esprit des Lois)의 저자는 자신의 저술 속에 수많은 탁월한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가 군주제의 토대는 막연한 명예의식이며 공화정의 토대는 미덕이라는 자신의 기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의 예를 인용하면서, “매질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게 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명예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은 큰 오류이다. 중국에서는 하층민 사이를 헤치고 지나갈 때 회초리를 휘둘러 길을 내고 무례하고 교활한 거지들에게는 매질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분명한 점은 중국을 통치하는 것은 서로를 견제하는 재판정들이고, 또 이것은 탁월한 통치형태라는 사실이다.

백을 이끌어내고자 고통스러운 고문을 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의한다. 그것은 신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동정심의 발로이다. 생각해보라. 법은 이 피고인들에 대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죽음보다도 훨씬 끔찍한 고통이 가해진다. 이들의 범죄 여부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사실이 밝혀질 경우야 선고될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이것은 마치 다음과 같은 억지를 쓰는 꼴이다. 즉 “나는 너에게 죄가 있는지 아직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너를 고문해야겠다, 만약 네가 죄가 없다 해도 나는 네게 미안해할, 너를 위해 마련해두었던 단 한 번의 죽음 대신에 그 수없는 죽음의 고통들을 겪게 한 데 대해서 속죄할 생각이 없다”, 라고 말이다. 이런 생각에 전율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에서 고문을 비난했다는 사실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로마에서는 대상이 노예일 때만 고문을 했으나, 이에 대해 퀸틸리아누스<sup>43)</sup>는 노예 또한 인간임을 상기하면서 이 잔인한 짓을 비난했다는 점을 구태여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만약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든 고문이라는 관습을 폐지했을 때 이곳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줄어들었다면, 또한 고문의 폐지 이후로 이 나라가 더욱 문명화되고 번영했다면, 이 나라의 사례만으로도 나머지 나라들 전체에 대해 모범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영국이 이와 같은 모범을 보인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 백성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하리라. 그러나 이러한 모범으로 들 수 있는 나라가 영국만은 아니다. 몇몇 다른 나라도 고문을 금지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볼 때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다. 스스로 개화되었노라고 자부하는 국민들이라면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국민들이 비인간적인 고문 행위를, 그것이 관례였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계속 고집하려 하는가? 적어도 그런 잔인한 신문 방법은 아비나 국왕의 살해범들 즉 의심할 여지없이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공범이 있다면 마땅히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그다지 큰 영향 없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젊은이를 두고 부모나 군주를 살해한 범인과 동일하게 고문을 가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야만적 행위가 아닌가? 나는 『범죄와

<sup>43)</sup> Marcus Fabius Quintilianus (35~96), 고대 로마의 수사학자, 교육자, 웅변술 교사로 많은 제자를 키웠다. 그가 남긴 『변론술 교정』은 교육이론과 문학비평에 큰 영향을 주었다.

형벌』의 저자가 고문의 폐지에 대해 그토록 명철하게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주제를 꺼낸 것이 부끄럽다. 나로서는 다만 인도주의의 옹호자인 이 저자의 역작이 널리 읽히기를 바랄 뿐이다.

### XIII. 몇몇 잔혹한 재판소들에 대하여

종교 재판소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최고재판소가 예전에 있었다는 사실이, 또한 이 재판소를 설립한 사람이 샤를마뉴 황제라는 사실이 과연 믿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베스트 팔렌 재판소로서, ‘비밀 법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법정은 대단히 엄격해서,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잔인해서 사순절 기간에 절식을 어긴 모든 색슨족을 사형에 처했을 정도였다. 이와 같은 가혹한 법이 12세기 초에는 플랑드르와 프랑슈 콩테 지방에서도 채택되었다.

부르고뉴 백작령의 가장 험한 바위 지대에 위치한 생 클로드라는 작은 도시의 기록 보관소에는 어떤 인물의 처형과 관련된 조서(調書)와 판결문이 남아 있다. 그 사람은 클로드 귀용이라는 이름의 한 가엾은 신사인데, 그는 1629년 7월 28일 참수되었다. 그 남자는 극도로 빈곤한 처지에 놓여 몹시 굶주리던 차에 이웃 목장에서 잡은 말고기 한 토막을 먹었는데, 그날은 바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날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죄였다. 그에게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만약 그가 부유했더라면, 그래서 만약 200에퀴 어치의 생선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식탁을 차릴 수 있었더라면, 그는 자신의 모든 의무를 완수한 사람으로 법의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다음은 그를 판결한 재판관의 판결문 중 한 구절이다.

“본 법정은 이 소송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법률 신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 이 사건의 피고 클로드 귀용이 이 도시의 목장에서 도살된 말의 고기를 가져가서, 3월 31일 토요일에 전술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는 등등의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선언한다.”

법률 자문을 해주었다는 신학자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와 같은 일들은 토피남부스족(族)이나 호텐토티족(族)<sup>44)</sup>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44) 서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 주변에 사는 미개 종족.

‘비밀법정’은 이보다 훨씬 무서웠다. 이 재판소는 비밀리에 순찰사들을 독일 전역에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게 했는데, 각 도시마다 흩어진 이 일종의 비밀경찰들은 위반사실을 캐내도 그것을 피고인들에게 통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해명을 듣지 않고 판결을 내리곤 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사형집행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면 순찰사들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 죄인을 손수 목매달았다. 이 재판소가 자행하는 암살을 모면하려면 황제의 사면장을 얻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러한 사면장이 소용없을 때도 자주 있었다. 이 살인자들의 재판소는 막시밀리언 1세<sup>45)</sup> 때에야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 법정을 해산시키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가차 없는 응징이 내려졌어야만 했다. 베네치아의 10인 법원<sup>46)</sup>은 이와 비교해 볼 때 차라리 자비로운 곳이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을, 그리고 이외에도 무수히 저질러졌던 참혹한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인간의 본성을 한탄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그 인간 본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XIV. 정치에서 나온 법과 자연에서 나온 법의 차이에 대하여

자연법이란 자연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놓은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 자연이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것이다—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법률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히 도둑질이나 폭행, 살인, 키워준 부모에 대한 배은망덕, 죄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치기 위해서 행하는 거짓 서약, 조국에 대한 모반, 이런 것들은 명백한 범죄로서, 엄격하게 그러나 언제나 정당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정치로부터 생겨난 법이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든,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제정된 법률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도시의 내부 사정이 적에게 새어나갈 것이 두렵다고 하자. 그러면 성문을 닫아 건 다음, 아무라도 성벽을 넘어 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이

<sup>45)</sup> Maximilien I (1459~1519), 오스트리아의 대공이며 독일의 왕,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재위 1493~1519)였다. 합스부르크 왕가를 유럽의 지배세력으로 만들었다.

<sup>46)</sup> 1310년 베네치아가 설치한 비밀재판소로서 대심의회에서 선출한 10인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의 주된 목적은 국가 안위의 수호였으며,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내려질 것이다.

새로운 종교가 걱정된다고 하자. 이 새 종교는 공개적으로는 왕에 대한 복종을 내세우면서 은밀한 곳에서는 불복종을 책동하고 있다. 이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전례를 똑같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설교한다. 결국 이들은 인간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신에게 복종하는 편이 낫다는 구실로, 또한 기존의 지배 종교가 미신과 우스꽝스러운 의식으로 오염되었다는 구실로 국가가 신성시하는 것을 파괴하고자 한다. 이럴 때는 새 종교의 교의를 공공연히 내세우며 백성을 반역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린다고 법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

두 명의 야심가가 왕좌를 놓고 겨루어서 더 강한 편이 마침내 이겼다고 하자. 왕위를 차지한 사람은 경쟁에서 진 편의 지지자들에게 죽음을 내린다. 재판관들은 새로운 군주의 복수를 위한 도구, 그의 권력의 받침대가 된다. 위그 카페가 통치하던 시절, 누구든지 샤를 드 로렌과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막강한 세력가가 아닌 한, 자칫 사형을 선고받곤 했다.

자신의 두 조카를 살해한 리처드 3세가 영국의 왕으로 인정받았을 때, 대배심원은 기사(騎士) 기욤 콜링번을 능지처참형에 처했다. 그 죄목은 기욤 콜링번이 당시 군대를 일으켰던 리치먼드 백작 —그는 후에 헨리 7세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올랐다— 의 한 친구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콜링번이 직접 쓴 편지글 두 줄이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정말이지 하찮은 내용이었으나 이 기사양반을 끔찍한 형벌로 죽이기에는 충분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재판의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보복법(報復法) 역시 여러 국가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법률 중의 하나이다. 당신의 적이 당신 군대의 용감한 장수 한 사람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하자. 이 장수는 어느 작은 성(城)이 함락된 다음에도 적의 군대 전체를 대적해서 한동안 버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의 장수 하나가 당신의 포로가 되었다. 이 포로는 뛰어난 덕성을 지녔기에 당신은 그를 존경하고 아낀다. 그러나 당신은 보복을 위해 그를 교수대에 목매단다고 하자. 당신은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이 아니냐고. 다시 말해 나의 적이 큰 죄로 손을 더럽혔으니, 나 역시 다른 죄를 범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피투성이 정치로부터 나온 이 모든 법률들은 생명력이 짧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법률들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이상,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법률이란 인간이 때때로 극도의 기아 상태에 처했을 때 불가피하게 먹게 되는 인육과도 같다. 그건 빵만 주어지면 결코 먹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 XV. 대역죄. 타이터스 오츠, 그리고 오귀스트 드 투의 처형에 대하여

대역(大逆)이란 국가나 그 국가를 대표하는 군주를 침해한 죄이다. 대역죄는 부모살해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대역죄의 범위를 부모살해죄와는 거리가 먼 범죄들로까지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중앙 관청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거나, 공금을 횡령했거나, 심지어 불온한 말을 퍼뜨리는 행동까지 대역죄로 다룰 경우, 대역죄 혹은 국가반역죄라는 최악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켜야 할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큰 범죄들을 규정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자유재량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쳤다고 하자. 혹은 아들이 아버지를 욕했다고 하자. 이런 범죄를 부모살해죄와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끊어버리게 된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무서운 주인으로만 여기게 될 것이다. 법 속에 무언가 지나친 점이 있으면 그것은 법이 무너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곤 한다.

영국의 법은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대역죄의 경우에는 그와 정반대이다. 다음의 사례가 그러한 예이다. 전(前) 예수회 신부 타이터스 오츠<sup>47)</sup>는 하원 재판부의 심문을 받을 당시 더 이상 숨기는 사실이 없다

<sup>47)</sup> Titus Oates (1649~1705), 소위 ‘카톨릭 음모사건’을 조작한 인물이다. 그는 원래 영국 국교회에 속했으나, 카톨릭을 광신적으로 반대하던 한 친구의 영향을 받아 사건이 일어나기 몇 해 전 카톨릭 교도들에게 불리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 거짓으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1678년 그는 예수회가 국왕 찰스 2세를 암살하고 찰스의 동생이며 로마 카톨릭 교도인 요크 공작(나중에 국왕 제임스 2세가 됨)을 왕위에 앉히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를 상상으로 꾸며냈다. 그의 허위 진술에 의해 런던에는 한동안 공포정치가 휘몰아쳐 35명의 무고한 사람이 처형당했고, 반(反)카톨릭 정당인 휘그당의 세력이 강화되었다. 1685년 요크 공작이 제임스 2세로 즉위하자 오츠는 위증죄로 고소당했고, 형틀에 묶여 대중 앞에서 조롱당한 뒤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1688년 명예혁명으로 제임스 2세가 폐위되자 그 또한 석방되었다.

고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고발하기를, 요크 공작 즉 훗날의 제임스 2세의 비서관과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의 고발은 받아들여졌다. 처음에 국왕의 법정에 불려나가 진술할 때 그는 이 비서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맹세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이 그를 보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상에서 보듯이 타이터스 오츠가 위증이라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분명하고, 또한 그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크 공작의 비서관은 처형당했다.

바로 이 오츠라는 자와 또 다른 한 명의 증인이 진술하기를, 예수회 신부 50명이 국왕 찰스 2세의 암살을 획책했고, 자신들은 예수회 회장인 P. 올리바가 반란군을 지휘할 장교들을 임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많은 피고인들에게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내 그것으로 뺨을 치는 형벌이 내려지는 데는 이 두 명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두 사람의 악의의 표적이 된 사람들을 단지 두 사람의 증언이 있었다고 해서 처형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두 밀고자가 명백한 사기꾼이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들의 증언이 납득할 수 있을 내용이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가장 정직한 법관 두 사람이 한 남자를 기소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기소라는 것의 내용이 이 남자가 이슬람의 무프티<sup>48)</sup>와 공모해서 국무회의와 고등법원, 회계원의<sup>49)</sup> 전 사법관들과 대주교, 소르본의 신학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면, 그 이슬람 무프티가 보내온 편지를 자신들이 보았노라고 두 법관이 아무리 서약한다 한들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두 법관의 증언을 믿기 보다는 차라리 이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예수회 회장이 영국에서 군대를 일으켰다는 추측도 무프티가 프랑스 궁정인들에게 할례를 해주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만큼이나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사람들은 타이터스 오츠의 진술을 믿었다.

48) Mufti, 이슬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재판관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공식적인 법적 견해를 밝히는 이슬람교의 법률권위자. 무프티는 원칙상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었으나 오스만 왕조에 이르러 관료제도의 일환으로 편제되어 이스탄불의 최고 무프티가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최고 종교권위자가 되었다.

49) 국무회의(Conseil d'Etat), 고등법원(Parlement), 회계원(Chambre des comptes)은 모두 중세 국왕의 통치기구였던 왕실법정(Cour du roi)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기관들이다. 중세 왕실법정은 국왕의 측근(가족, 친지, 성직자)과 종신들로 구성되었으며, 왕국의 통치 전반을 관장했다. 그러나 점차 다루어야 할 일이 복잡해지고 증가함에 따라 국왕의 정무를 보좌하는 국무회의, 사법기관인 고등법원, 국왕령의 재정 경영과 왕실의 회계를 전담한 재정기관인 회계원으로 분화했다.



그 어떤 종류의 끔찍한 어리석음일지라도 인간들의 머릿속을 파고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영국의 법은 어떤 음모를 미리 알고도 그것을 고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 이들을 해당 모반 사건의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영국의 법은 음모가 범죄인 것만큼이나 밀고 역시 과렴치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음모를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고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다. 루이 11세는 모반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법을 생각해 냈다. 루이 12세나 앙리 4세였다면 결코 이런 법을 구상했을 리가 없다.

이 법은 선량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범죄의 밀고자가 되도록 강요한다. 그렇지만 았다면 현명한 충고나 단호한 반대를 통해 미리 막을 수도 있을 범죄인데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이 선량한 사람을 또 다른 위협으로 내몬다. 즉 그는 중상모략을 했다고 처벌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대책을 단단히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고발해봤자 자칫 이들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정 참사관을 지낸 존경스러운 프랑수아 오귀스트 드 투<sup>50)</sup>의 경우가 바로 이랬다. 그는 프랑스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훌륭한 역사가의 아들로서, 지식에 있어서는 기사타르에 필적하고 공정함에 있어서는 아마도 그를 능가할 사람이었다.

문제의 음모 사건은 루이 13세보다 리슐리외 추기경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 음모 속에는 프랑스를 적들에게 넘겨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사실 국왕의 아우가 이 모반의 주모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자신이 물려받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던 왕국을 —그 자신의 왕위 계승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는 병들어 죽어가는 형과 아직 아기에 불과한 형의 두 아들 밖에 없었다— 팔아먹으려 했을 리 없지 않은가?

드 투는 하느님 앞이나 인간들 앞에서 고개 숙여야 할 죄를 짓지 않았다. 무슈<sup>51)</sup> 즉, 국왕의 유일한 아우이며 부이용 공작인 스당의 대공과 그랑 에퀴에인

<sup>50)</sup> François Auguste de Thou (1607~1642), 프랑스의 사법관. 리슐리외를 제거하려는 음모의 공모자로 몰려 생 마르와 함께 리옹에서 처형당했다. 이 음모 사건의 재판 당시 생 마르는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sup>51)</sup> 여기서 볼테르는 이 음모의 주인공인 루이 13세의 아우 가스통 도를레앙(1608~1660)을 대문자 무슈(Monsieur)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볼테르의 착각으로, 프랑스 역사에 있어 일반적으로 ‘무슈’라고 고유명사처럼 불리던 사람은 루이 13세의 차남이며 루이 14세의 아우이던 필립 도를레앙이다.

데피아 생 마르<sup>52)</sup>의 하수인들 중의 한 명이 이 음모 계획을 드 투에게 말해주었다. 드 투는 생 마르를 찾아가서 이 일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며 음모를 단념하게 하려고 했다. 만약 그가 그 때 음모자들을 고발했다 한들, 음모 계획을 말로만 전해들은 그에게는 이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왕위의 추정 후계자이자 대공이며 또 국왕이 아끼는 아우이기도 한 인물이 음모를 부정하고 나설 경우 도저히 이를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은 공공의 비난을 뒤집어써야만 했을 것이다. 그는 비열한 중상자로 처벌받을 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드 투가 처했던 어려운 상황은 드 투와 그랑 에퀴에를 대질시킬 때 세귀에 대법관조차 인정했던 점이다. 이 대질 신문에서 드 투는 생 마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조서에 기록되어 있다. “선생,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신에게 이 계획을 단념시키려고 했던 날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생 마르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따라서 인도적 공평성에 따라 심판한다면 드 투는 죽음보다는 상을 받아야 했고, 적어도 리슐리와 추기경에게서 사면을 얻어낼 만한 명분은 있었다. 그러나 인도주의는 여기서 아무 효력도 가지지 못했다. ‘*summum jus, summa injuria* (최대의 공정은 최대의 불공정)’<sup>53)</sup>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그보다도 더 나쁜 어떤 사례를 보여준다. 이 선량한 사람에 대한 사형 판결문에는 “당(當) 음모를 미리 알고 가담했으므로”라고 적혀 있다. 결코 “당 음모를 고발하지 않았으므로”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범죄를 알았다는 사실이 드 투의 범죄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눈과 귀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한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분명한 점은 이와 같은 판결이 법이 아닌 재판관들에 의해 내려졌다는 사실이

<sup>52)</sup> Henri Coiffier de Ruzé d'Effiat (1620~1642), 흔히 생 마르 후작(Marquis de Cinq-Mars)으로 불린다. (그랑 에퀴에라는 직함은 왕이나 대귀족의 시종직 중의 하나로서 마구간 관리 책임을 맡은 시종을 가리킨다.) 12세 때 부친 뤼제 원수가 죽은 뒤 부친의 친구였던 리슐리와 추기경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리슐리외의 소개로 루이 13세의 궁정에 들어가 왕의 총신이 되었다. 사치와 오만, 방종으로 리슐리외의 근심거리가 된 그는 이 강력한 재상이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리슐리외를 몰아낼 음모를 꾸몄다. 그의 계획은 왕의 동생인 오를레앙공 가스통 및 다른 고위 귀족들과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프랑스와 전쟁 중이던 스페인에 국경을 열어주려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1642년 3월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비밀조약까지 체결했으나, 그해 6월 조약문서의 사본이 리슐리외의 손에 들어가 체포되었으며, 반역죄로 기소되어 리옹에서 참수되었다.

<sup>53)</sup> 지나치게 엄격한 법 규정은 도리어 엄청난 불의(不義)가 된다는 의미.

다. 법에는 죄인을 가차 없이 죽음에 처하라고 명확한 글로 써어있다. 그렇다 해도 그 법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법의 정신이 타락하지 않은 한, 법률가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어야 할 몫이다. 국민 전체에 의해 무죄라는, 또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판결을 받은 한 사람에게 소수의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판결을 내려 처형한 것은 서글픈 모순이다.

## XVI. 고해를 통한 범죄의 누설에 대하여

도량주 대공 기욤 1세의 암살자들인 조리니와 발타자르 제라르, 도미니크회 수도사 자크 클레망,<sup>54)</sup> 샤텔,<sup>55)</sup> 라바이악,<sup>56)</sup> 그리고 그 시대의 다른 모든 암살자들 역시 자신들의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고해를 했다. 그 불행한 몇 세기 동안에는 광신이 극에 달했던 나머지, 고해라고 해봤자 이들에게 악행을 완수하라고 한층 더 촉구하는 것에 불과했다. 게다가 고해가 성사(聖事)라는 이유로 해서 이들의 악행도 성스러운 것이 되었다.

스트라다 자신은 말하기를, 조리니가 “*non ante facinus aggredi sustinuit, quam expiatam noxis animam apud dominicanum sacerdotem coelesti pane firmaverit*” 즉, “도미니크회 수도사의 발밑에 엎드려 고해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성령의 빵을 통해 영혼의 힘을 얻지 않았더라면 감히 이 일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라바이악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행한 자가 피양 수도회를 나와 예수회로 들어갈 뜻을 품고 예수회 신부 도비니에게 자문을 구했었다는

<sup>54)</sup> Jacques Clément, 1589년 프랑스 왕 앙리 3세를 비수로 살해한 도미니크회 수도사. 앞서 1588년, 앙리 3세는 카톨릭 동맹의 지지를 받고 있던 앙리 드 기스를 블로아 성으로 불러들여 참살하고, 이어 그의 형제인 기스 추기경도 처형했는데, 자크 클레망은 신학자들로부터 위 사건의 복수와 카톨릭의 수호를 위해서 행하는 왕의 시해는 무죄라는 보증을 받고 카톨릭 동맹 측의 국왕 시해 선동에 응했다. 앙리 3세는 숨을 거두면서 신교도인 앙리 드 나바르 즉 앙리 4세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sup>55)</sup> Jean Châtel, 예수회의 열렬한 제자로서, 1594년 예수회의 사주를 받아 앙리 4세를 암살하려다가 처형당했다. 이 사건 후 예수회는 일시적으로 추방당했으나 1603년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다.

<sup>56)</sup> Ravailac, 피양(Feuillants)회 소속의 광신자로서 1610년 마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던 앙리 4세를 암살한 인물.

사실이다. 이 조서에 따르면, 그는 도비니에게 자신이 본 많은 환영들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칼날에 심장과 십자가가 새겨진 단도 한 자루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 예수회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이 심장의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국왕의 심장을 찌름으로써 위그노들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도비니가 애국심과 신중성을 갖춘 사람이라서 자신이 들은 말을 왕에게 알렸더라면, 혹시라도 그가 자기 앞에서 계획을 털어놓았던 남자의 인상착의를 고해바쳤더라면, 그 지극히 훌륭한 왕은 암살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앙리 4세가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모든 프랑스 국민의 가슴을 물들이며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후인 1610년 8월 20일, 차장검사 세르뱅은 —그의 고명함은 아직까지 시들지 않고 있다— 구형하기를, 예수회 신부들은 아래와 같은 네 개의 조항에 서명하라고 했다.

1. 국왕의 국무회의는 교황 위에 있다.
2. 교황은 파문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국왕으로부터 그 어떤 권리도 빼앗을 수 없다.
3. 성직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전적으로 국왕에게 복속되어야 한다.
4. 국왕과 국가에 대한 모반을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성직자는 그것을 사법관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달 22일,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에 따라 예수회 신부들은 위의 4개 조항에 서명하기 전에는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교황청은 매우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고 프랑스의 궁정은 힘이 약했으므로, 이러한 판결은 무용지물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군주의 생명이 관계된 경우에는 고해 내용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한 이 로마 교황청이 고해신부들에게는 여인들이 고해하는 도중에 자신들을 유혹하여 간음케 한 남자들의 이름을 대면 이들을 종교 재판관들에게 고발하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이다. 교황 파울루스 4세, 피우스 4세, 클레멘스 8세, 그리고 고리우스 15세<sup>57)</sup>가 이러한 경우에 죄인을 고발할 것을 명령했다. 이것은 고해신부들과 고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몹시 곤혹스러운 궁지였다. 성사(聖事)를 밀고의 온상으로 심지어 신성모독의 온상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왜냐하

<sup>57)</sup> 저자 주: 이러한 명령이 담긴 그레고리우스 15세의 교서가 내려진 날짜는 1622년 8월 30일이다.

면 교회의 옛 법령 특히 인노켄티우스 3세가 개최한 라테란 공의회(1059)에서 확립된 교회 법령에 따르면, 고해의 내용이 그 어떤 성질의 것이라 해도 그것을 누설하는 사제는 성직을 빼앗기고 종신 구금에 처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훨씬 더 나쁜 일이 있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4명의 교황이 군림했지만, 이들은 음란죄에 대해서는 밀고를 명했으면서도 반역죄의 밀고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여인이 카르멜회의 어느 수도사에게 고해를 하면서 성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한 명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혹은 그런 것 같다고 고백한다 하자. 그러면 카르멜회 수도사는 이 성 프란체스코회 수도사를 고발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군주를 죽이는 일이 하느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믿는 어느 광신적인 암살자가 고해신부를 찾아와서 이 경우 양심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이 때 만약 고해신부가 암살자의 고해내용을 밀고해서 자신의 군주의 목숨을 구한다면 그는 신성모독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가증스러운 모순은 수 세기 이래로 교회법과 세속법이 빚어온 끊임없는 대립의 결과이다. 시민은 수많은 경우에 신성모독과 대역죄 사이에 끼여 괴로워한다. 그리하여 선과 악의 규범들은 혼돈 속에 파묻히게 되어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과오를 고해하는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나 허용해온 일이다. 오르페우스, 이시스, 케레스를 숭배하는 밀교(密敎)에서도, 사모트라키의 종교 의식에서도 사람들은 참회의 의식을 올리곤 했다.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고백했고, 아직도 이 속죄 의식을 지켜오고 있다. 회개할 사람이 자신의 참회를 들어줄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다음 입장을 바꾸어 참회를 들은 사람이 이번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사람씩 자신의 참회 동반자로부터 회초리로 서른아홉 대를 맞는데, 매를 맞는 동안 각자 참회문을 세 번씩 암송한다. 이 참회문은 열 세 개의 단어만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개별적인 참회의 말을 더 보탤 필요는 없다.

유대인들의 속죄일에 행해지는 이 참회들은 결코 세부적인 내용에까지 들어가는 적이 없다. 따라서 그 어떤 참회라도 은밀한 자문(諮問)을 구하는 구실이 되지 않았다. 광신자들이 죄를 짓고도 벌 받지 않을 권리를 얻기 위해 때때로 고해라는 형식을 빌려 해왔던, 유익한 제도를 타락시키는 해로운 수단인 그런 자문들 말이다. 고해는 가장 강력하게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불운하고 어지러운 시절에는 종종 그 범죄 자체를 부추기기도 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교 사회가 고해 제도를, 자신들이 보기에 유익한 만큼이나 위험하기도 한 이 성사를 폐지했을 것이다.

### XVII. 화폐 위조에 대하여

화폐를 위조하는 범죄는 대역죄 중에서도 두 번째로 위중한 경우로 간주되었고, 또 그러한 취급은 정당하다. 국가의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둑질을 하는 것은 국가를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 상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괴를 들여온 다음 그것을 재료로 삼아 자기 집에서 금화를 주조했다 하자. 이 상인은 대역죄인이고 따라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일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을 극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인의 경우 그 누구로부터도 돈을 훔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는 더 많은 통화량을 만들어냄으로써 국가에 부(富)를 보탠 셈이다. 그렇지만 그는 군주에게 속한 권한을 훔쳤다. 그는 국왕이 화폐 주조를 통해 얻는 약간의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돌렸으니 그 이익을 도둑질한 셈이다. 그는 비록 양화(良貨)를 주조했다 해도, 자신의 모방자들에게는 악화(惡貨)를 주조하려는 유혹을 심어준다. 이런 죄는 죽음을 내리도 불평할 게 없다. 내가 아는 어느 판사는 제안하기를, 이런 죄인이란 솜씨가 뛰어나고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므로 발에 족쇄를 채워 국왕의 조폐국에서 노역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 XVIII. 하인의 절도에 대하여

하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인으로부터 훔쳤을 경우에도 이 범인을 사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자. 이처럼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은 사회에 지극히 위험한 것이 아닐까? 이런 형벌은 오히려 좀도둑질을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 이유란 다음과 같다. 즉 주인이 가벼운 도둑질을 한 자신의 하인을 사법 기관에 넘겨서 처형되도록 한다면, 이 하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법이 인간의 본성과 어긋난다고 여길 것이며, 따라서 법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치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도둑질을 당한 주인들은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싶지는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자기네 하인들을 전부 쫓아낼 것이다. 쫓겨난 하인들은 다른 곳에 가서 도둑질을 할 것이고, 그러다 점차 강도짓이 몸에 익을지도 모를 일이다. 경미한 줌도둑질이나 아주 큰 도둑질이나 똑같이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는다면, 이들이 이왕이면 더 큰 것을 훔치려 들 것은 자명하다. 심지어 이들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자신의 도둑질을 듣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형벌이 범죄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부과될 경우, 즉 도둑질을 한 하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공공노역 정도라면, 주인은 별 거리낌 없이 하인을 고발할 것이다. 하인을 고발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불명예가 돌아갈 이유도 없다. 그리고 도둑질은 줄어들 것이다. 이 모든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나치게 엄격한 법이 때로 범죄를 초래한다는 이치가 입증되지 않는가?

## XIX. 자살에 대하여

유명한 뒤베르지에 드 오란, 즉 포르 르외얄의 설립자로 일컬어지는 생 시랑 신부는 1608년 무렵 자살에 대한 논고 한 편을 썼는데, 이것은 유럽의 가장 귀중한 저술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 자신을 죽이는 일도 이웃을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로 이 계율에 포함된다. 그런데 만약 이웃을 죽이는 일이 허용될 경우가 있다면 자살이 허용되는 경우도 역시 있을 것이다. 누구든 생명을 해치고자 할 때는 우선 이성에 비추어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공권력이란 신(神)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 역시 신의 이성을 대신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란 영원한 빛이 퍼뜨리는 하나의 빛줄기인 것이다.”

생 시랑은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논의를 단지 궤변에 불과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토론에 들어가 세부적인 논의로 접어들면 그에게 반박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자신이 섬기는 왕의 안녕을 위해, 조국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부모의 행복을 위해 자살할 수도 있다, 라고.

사실, 코드루스<sup>58)</sup>와 쿠르티우스<sup>59)</sup>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해 몸을 바쳤을 때 그 사람의 가족을 감히 별한 군주는 없다. 아니, 다시 말해 그 가족에게 보상을 하지 않은 군주는 없다. 생 시랑 이전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성 토마스나 성 보나벤투라<sup>60)</sup>, 드 오란의 어록을 끌어낼 필요는 없다.

생 시랑 신부는 결론 내리기를, 무엇을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행해도 좋다고 했다. 우리는 플라타르크, 세네카, 몽테뉴, 그리고 다른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글 속에서 자살을 옹호하며 내세운 주장들을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귀에 익은 일반론이다. 나는 여기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구약성서도 신약성서도 인간이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 삶을 떠나는 것을 결코 금지하지 않았다. 로마법 중에도 자살을 단죄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다. 반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황제가 제정한 법을 보라. 그 법률 조항은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나 형제가, 자살이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탓에,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나 사는 것이 지겨워서, 절망으로 인해, 혹은 발광 상태에서 자살한다 해도 자살자의 유언은 유효하며, 유언 없이 죽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자식들이 그의 상속인이 된다.”

우리의 스승인 로마인들이 이런 인도적인 법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자살한 사람의 시신을 사립뜰에 실어 말 뒤에 끌고 다니다가 다시 그 시신에 말뚝을 박고 있다. 우리는 고인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의 가족에게 불명예를 떠안긴다. 우리는 아버지를 잃었다는 죄로 아들을 벌하며 남편을 잃었다는 죄로 미망인을 벌한다. 심지어 자살자의 재산을 몰수하는데, 사실

58) Codrus, 아테네의 마지막 왕. 역사적으로 실존인물인지는 분명치 않다. 전설에 따르면 도리스족이 아테네를 공격했을 때, 델포이의 신탁은 아테네의 왕이 도리스족의 손에 죽어야만 아테네인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코드루스는 변장하고 도리스족의 병영으로 숨어들어가 사소한 싸움을 일으켜 피살되었고, 그의 정체를 안 적군은 퇴각했다고 한다.

59) Marcus Curtius, 로마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대로마의 전설적 영웅이다. 그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연못이 라쿠스 쿠르티우스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60) San Bonaventura (1221~1274), 중세 신학자로 알바노의 주교 추기경이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 총회장이 되어 이 수도회를 개혁했으며, 이 수도회를 위해 『아시시의 성 프란키스쿠스의 생애』(1263)를 다시 썼다.



이것은 남은 가족이 물려받아야 할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다. 이러한 관행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법으로부터 나왔다. 교회법은 자살한 사람을 매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교회법으로부터 사람들은 결혼 내리기를, 하늘에서 자신의 몫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자를 가질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교회법의 고해총칙서(告解總則書)<sup>61)</sup>에는 유다가 저지른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는 데 보다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는 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XX. 거세(去勢)에 대하여

고대 로마의 판례집에 나와 있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법을 보면, 의사들이 고환을 잘라 내거나 터뜨리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 남자를 거세해줄 경우 그 의사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 재산을 몰수당하곤 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오리게네스<sup>62)</sup>는 처벌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거세한 사람들이 있다”, 라는 마태복음의 구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이 시술을 받았으니 말이다.

하드리아누스 이후의 황제들 치하에서는 사정이 변했다. 후기의 로마 황제들은 아시아적인 호사(豪奢)를 받아들였고, 특히 콘스탄티노플의 후기 로마제국에서는 환관들이 총주교가 되었고 군대를 지휘했다.

오늘날 로마 교황청에서는 관례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거세시켜 교황의 성가대에 넣고 있다. 그래서 카스트라토<sup>63)</sup>와 교황의 가수라는 말이 동의어가 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폴리에서는 몇 군데 이발관의 문 위에 붉은 글자로 “본 업소에서는 사내아이들을 솜씨 좋게 거세해드립니다*Qui si castrano maravigliosamente i putti*”라고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61) 참회규정서. 잘못된 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고해를 지시한 교회법규집.

62) Oregenes (185?~245?),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이며 성서학자이다. 구약성서 그리스어 본문 연구와 성서 전체에 대한 해석에 평생을 바쳤으며, 이교도의 비판에 맞서 그리스도교를 변호했다. 대표작으로는 구약성서의 6가지 판본을 병기한 『헉사플라Hexapla』가 있다.

63) 소프라노의 음색을 보존하기 위해서 변성기 이전에 거세된 가수.

## XXI.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범죄에 부과된 재산몰수에 대하여

“몸을 구속하면 재산도 몰수하라.” 이것이 재판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 관습이 법을 대신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탓에,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이런 지방에서는 자신들의 서글픈 생명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또 살인자의 자녀들을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만든다. 바로 이런 원칙으로 인해 가족 중 단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쨌거나 그 가족 전체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家長이 신고 설교사 한 명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다는 죄로 혹은 어떤 지하실이나 인적 없는 들판에서 그의 설교를 들었다는 죄로 재판관의 임의적 결정에 따라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으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먹을 것을 구걸하는 처지로 굴러 떨어진다.

로마 공화정이 이어져오는 동안에 이처럼 아버 잃은 자식들에게서 양식을 빼앗고 한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법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술라<sup>64)</sup>가 살생부에 공고되어 처벌된 자의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그러한 법을 도입한 것이다. 술라가 고안한 재산 강탈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낸 근본적 동기는 단지 인간적 정리(情理)와 탐욕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카이사르, 선량한 트라야누스, 안토니우스 같은, 전 세계로부터 여전히 존경과 애정을 받고 있는 황제들은 위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재산몰수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대역죄의 경우에만 행해지게 되었다.

중세 혼란기에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대공들이나 영주들의 재정 상태가 극히 나빴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신민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자신의 재화를 늘리는 수단으로 삼았고, 범죄로부터 소득을 올리고자 했던 것이다. 중세에는 법을 자의

<sup>64)</sup> Lucius Cornelius Sulla (BC 138~78), 로마의 장군이며 정치가. BC 88~82 사이에 있었던 로마 최초의 전면적인 내전에서 승리한 후 디타토르로 임명되어 정치체제와 입법, 군사, 사법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 이어서 그는 폭넓은 헌정개혁을 추진하여 로마 국가체제에서 원로원이 갖는 최고지위를 다시 확립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그가 실시한 개혁의 많은 부분은 공화정의 최후까지 존속했다. 그가 실시한 개혁들 중에는 속주총독 및 군지휘관들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반역죄 처벌법을 제정하고, 형사재판의 법정 수를 늘린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또한 살생부를 만들어 처벌대상자를 공시하는 방법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려 했다.

적으로 제정했고 로마법을 접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기이하거나 잔인한 관습들이 우선적인 효력을 지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군주들이 막대하고 안정적인 부(富)를 토대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가족의 미약한 재산으로 자신들의 재화를 늘릴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은 그것을 가장 먼저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어져 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피로 스스로를 살찌우는 것이 시민이 할 것인가?

로마법을 확고히 채택한 지방들은 툴루즈 고등법원 관할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산몰수를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부르보네나 베리, 멘느, 푸아투, 브르타뉴 지방 같은 관습법에 의존하는 몇몇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지방에서는 적어도 부동산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전에 칼레에서는 재산몰수법이 제정된 적이 있으나, 영국인들이 이 도시를 점령했을 당시에 영국인들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 나라 수도인 파리의 시민들이 작은 도시의 주민들보다 더 가혹한 법 아래에서 산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이하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법이 아무 원칙이나 기준 없이, 마치 시골 마을에 초가집 세우듯이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1673년 프랑스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시절에 차장검사 오메르 탈롱이 드 카니약이라는 한 미혼여인의 사건을 다루면서 고등법원에서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신명기 13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네가 어느 성읍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곳에 사는 모두를 칼날로 죽이고, 그곳에서 빼앗은 모든 것을 큰 길로 끌어내 모아놓고, 그 성읍 전체를 빼앗은 물건과 함께 불살라라, 그리하여 이 가증스러운 장소는 한 무더기의 재로 남으리라, 다시 말해 이는 여호와 주님께 바치는 재물이니, 이 저주받은 성읍의 재화 하나라도 네 손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역죄의 경우 죄인이 남긴 재화는 그 자식들로부터 빼앗아 국왕께 바쳐야 합니다. 아합왕은 ‘왕을 저주한’ 나뭇을 재판해서 나뭇의 재산을 차지하였고, 다윗왕은 므비보셋이 모반에 가담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런 사실을 알려준 시바에게 므비보셋의 모든 재화를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던 문제는 드 카니약 양의 유산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이 재산은 예전에 그녀의 부친에게서 몰수했던 것으로, 국왕의 명에 의해 왕실 재산관리인에게 맡겨졌고, 이어서 이 왕실 재산관리인이 그

녀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런데 일개 오베르뉴 여인에 대한 이 소송에서 차장검사라는 사람이 모범 사례로 내세운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한 부족의 왕인 아합의 일화인데, 아합왕은 법이라는 칼을 빌어 나뭇을 죽인 다음 그의 포도밭을 빼앗았던 사람이다. 아합왕의 행동은 가증스러운 것으로, 그의 이야기는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횡령하는 일에 대한 증오심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러일으키기 위해 종종 인용되곤 했다. 그러나 분명 나뭇의 포도밭은 드 카니약 양의 유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다윗왕이 사울왕의 손자이며, 요나단 —그는 다윗의 친구이며 보호자였다—의 아들 므비보셋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몰수한 일도 드 카니약 양의 유산 상속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일이다.

법률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인사들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이런 식의 현학, 주제와 무관한 무분별한 인용들, 인간 본성의 근본 원리들에 대한 무지, 어긋난 편견들로 뒤뜰려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XXII. 형사소송과 그 몇 가지 다른 방식에 대하여

앞으로 언젠가 프랑스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관습이 인도적인 법률에 의해 완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소송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몇 개 조항 역시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다. 형벌은 많은 경우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내려져 왔다. 프랑스 어느 지방에서든 한결같은 법을 대라면 바로 이것이다. 법이 이렇게 범인에게 가차 없다면, 그런 만큼 죄 없는 사람은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영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투옥되었을 경우, 단지 투옥에 그쳤을 뿐이라 해도 그러한 형벌을 내린 법무대신이 배상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내팽개쳐져 고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상대로 위로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는 사회에서 영원히 낙인찍힌 존재로 남게 된다. 죄 없는 사람이 낙인찍힌 채 살아가다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몸이 망가져버렸기 때문이다! 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은 동정과 존중이어야 할 텐데 말이다.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엄격함이 요구된다. 이것은 인간의 정의가 사악함에 맞서 싸우는 하나의 전쟁인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서까지도 너그러움과 동정심은 발휘되는 법이다. 용감한 자는 남을 동정할 줄 안다. 우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잔인했어야만 하는 것일까?

여기서 로마인의 형사소송과 우리의 경우를 몇 가지 점에서 비교해 보자.

로마에서는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증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그들을 상대로 캐묻거나 변호사를 시켜 심문할 수 있다. 이러한 재판 절차는 고상하고도 솔직한 것으로, 여기에는 로마인들의 아량이 드러나 있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 소송의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단 한 명의 재판관이 자신의 서기를 데리고 증인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심문한다. 이러한 심문 방식은 프랑수아 1세에 의해 수립되었고, 1670년 루이 14세의 칙령을 작성한 사법위원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단지 로마법을 오해한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

사람들은 증인심문법에 나오는 “*testes intrare iudicii secretum* (증인들은 증언을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증인들을 미공개로 심문하라는 뜻인 줄 알았다. 그러나 여기서 ‘세크레툼*secretum*’이란 단어는 재판관의 집무실을 가리킨다. ‘인트라레 세크레툼*Intrare secretum*’이 ‘비밀리에 말하라’라는 의미라지만, 이렇게 해석할 때 이것은 라틴어 어법에 어긋나게 된다.<sup>65)</sup> 이와 같은 통사 오용으로 인한 오해가 우리의 법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증인들이란 최하층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이들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심문할 경우, 재판관은 자신이 바라는 증언 내용을 이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이들 증인은 재차 심문을 받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심문, 즉 진술의 검진(檢眞) 역시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 내용을 검진 받은 후에 증인들이 만약 자신들의 증언을 번복하거나 중요한 대목을 수정하거나 하면 이들은 위증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즉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할 줄은 몰라도 심성은 곧은 어느 어수룩한 사람이 뒤늦게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 지나쳤거나 모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재판관의 말을 착각했거나 혹은 재판관이 자신의 말을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자신이 선서를 거쳐 진술했던 내용을 취소한다 하자. 그럴 때 이 사람은 범죄자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이렇게 위증자로 몰릴 것이 두렵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 증언을 철회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sup>65)</sup> ‘*secretum*’은 ‘조용한 곳’ ‘은밀한 곳’이라는 뜻의 명사로서, ‘비밀리에 말하라’라는 뜻으로 쓰려면 ‘*Intrare in secretum*’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 어수룩한 남자가 도망을 친다고 하자. 이때 그는 죄가 입증되었건 아니건 상관없이 처벌받게 될 것이다. 사실 어떤 법학자들은 강력히 주장하기를, 범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없는 한, 재판 궤석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법학자들은 —이들은 식견이 모자라지만 아마도 추종세력은 훨씬 클 것이다— 상반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도주가 바로 그가 저지른 범죄의 한 증거가 되며,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출석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법정을 무시한 이상, 이런 행동만으로도 그는 유죄가 입증되었을 경우와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양쪽 법학자들의 주장 중 어느 편을 재판관이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무고한 사람은 공소가 기각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아무 거리낌 없이 법률 속에 섞어 넣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망상이나 오류가 —이런 종류의 그릇된 생각들은 잔인성을 띠기 쉽다— 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프랑스 법체제의 큰 잘못이다.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두 개의 칙령이 전국에 내려진 적이 있었다. 칙령 하나는 민사소송에 대한 것으로, 법원에서 민사사건을 다룰 때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채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이 궤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에 대한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이 무죄 방면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법에 따르면, 채무를 진 사람은 빚을 졌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궤석 판결을 받게 되고, 반면에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궤석 때문에 범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궤석자를 판결해야 할지 여부가 재판관의 결정에 달려 있고, 법은 이 어려운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니 말이다.

피고인이 도주했을 경우 가장 먼저 취해지는 조치는 그의 전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다.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려주는 적조차 없다.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증거도 없고, 그가 결백한지 유죄인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우선 그에게 엄청난 손해부터 끼치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그가 신병(身柄) 구속 명령에 불복종한 데 대해 내리는 징벌이라고 말이다. 그렇지만 그를 이러한 불복종으로 내몬 것은 바로 우리의 형사소송 절차의 지나친 가혹함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발당했다 하자. 그는 우선 끔찍한 감옥에 감금되

고, 그 누구와도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된다. 그의 발은 마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쇠사슬로 묶인다. 그에게 불리한 증인들의 공술이 비공개로 열린다. 피고인은 이 증인들을 대질 심문 때 잠깐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들이 증언하기 전에 이 증인들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상세한 이유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그는 이 증인기피 신청의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전부 대야 한다. 증언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피고인이 증인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의 항의에 의해 증인들이 자신들이 사실을 과장했음을, 혹은 사실의 일부를 빠트렸음을, 혹은 자잘한 사항들을 착각했음을 깨닫는다 해도, 이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그릇된 증언을 고수하게 될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신문에서 진술한 정황이 증인들의 진술과 다르다면 이것만으로도 재판관이 —무지한 탓이든 편견을 지닌 탓이든— 죄 없는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소송 절차에 경악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재판 방식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 오 재판관들이여! 피의자로 몰린 무고한 사람이 도망치지 않게 하려면 그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방법을 마련해주시오.

법은 재판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심판자가 아닌 적(敵)으로 행동할 것을 강요하는 것 같다. 이 재판관은 피고인과 증인을 대질시키든가 아니면 그 절차를 생략하든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 대질 심문처럼 필수적인 일이 어떻게 재판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단 말인가?

이 지경에 이르면 관행은 법에 반(反)하는 것이 되고 만다. 법이 모호한 탓이다. 대질 심문이 늘 열리긴 해도, 재판관이 늘 모든 증인들을 대질시키는 것은 아니다. 재판관은 종종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증인들을 대질 심문에서 제외시킨다. 하지만 예심에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아무 것도 대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요치 않게 취급된 증인이 대질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다. 이 증인은 문제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황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다. 재판관조차도 이 정황이 중요하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조서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증인을 피고인과 대질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질 심문은 재판관의 재량에 맡겨질 일이 아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재판정의 온갖

금언들이 충고하는 바에 따라 도망칠 결심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재판을 피해 달아남으로써 그는 범죄가 입증되건 입증되지 않건 상관없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하여 채무를 진 사람은 빚을 졌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궤석 판결을 받게 되고, 형사 사건의 피의자인 사람은 범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궤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체 말이 되는가! 법이 사람의 생명보다 금전을 더 중시하다니! 오 재판관들이여! 존경스러운 안토니우스 황제와 선량한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물어보시오. 그들이 명하지 않았소. 재판 궤석자들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이오.

맙소사! 우리의 법은 공금횡령자, 위장 도산자에게는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일을 허락하면서, 어느 신의 있는 사람이 이러한 도움을 청할 경우 종종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이 변호사의 변론으로 죄 없음을 밝힌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법조항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드 라무와농 재판장은 이런 법조항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까지 관례상 피고인들에게 붙여진 고문변호인이란 결코 칙령이나 법률로 허용된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법보다 더 오래된 자연법이 인간에게 준 자유이다. 자연은 사람들 개개인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즉 자신이 충분한 지식이 없어 잘 처신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지식을 빌려야 한다고, 또 자신이 약해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이다. 지금까지의 칙령들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이 제거되어 왔기 때문에 남아 있는 혜택들은 피고인들에게 보존해주는 것이 옳다. 남아 있는 특혜 중에서도 변호인을 두는 일은 피고인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프랑스의 소송법을 로마인이나 다른 국가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프랑스의 —특히 1539년 칙령 이후의— 소송법만큼이나 가혹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소송법은 1670년의 칙령 이후로 훨씬 더 가혹해졌다. 법률 위원 대다수가 드 라무와농 재판장 같은 생각을 가졌더라면 우리의 소송법은 훨씬 온화해졌을 것이다.

틀루즈 고등법원은 증언에 입각한 증거를 다루는 데 있어 기이한 관행을 가지고 있다. 다른 고등법원들에서도 반(半)증거가 채택되기는 한다. 그런데 사실 2분



의 1의 증거란 그것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반만 진실인 진실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툴루즈에서는 4분의 1 증거와 8분의 1 증거를 수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어떤 소문이 있을 경우 그것을 4분의 1 증거로, 이보다 더 신빙성 없는 소문이라면 8분의 1 증거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문 여덟 가지만 있으면, 그것이 애초부터 근거 없는 소문 하나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에 불과할지라도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장 칼라스에게 거열형이 선고된 것도 이러한 원칙을 따른 결과였다<sup>66</sup>). 로마의 법은 ‘밝은 대낮처럼 명백한’ 증거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 XXIII. 개선(改善)에 대한 소견

사법관이란 지극히 존중할 만한 직위이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직위를 돈으로 매매하는 이 나라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 바라건대 법률가는 자신의 연구와 말과 글로써 지켜온 정의를 자신의 미덕으로도 구현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되면 아마도 탁월한 입법을 통해 균형 있고 일관된 법제가 탄생할 것이다.

동일한 소송에 대하여 지방과 수도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내려질 때가 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될 것인가? 동일한 사람이 브르타뉴에서는 옹고랑그독에서는 틀려야만 한다는 말이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면 도시 수만큼 각각 다른 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고등법원 내에서도 한 재판정의 원칙이 옆의 재판정과는 다르다는 말이다.

<sup>66</sup> 1762년 툴루즈의 신교도인 칼라스는 카톨릭으로 개종하려던 아들을 교살했다는 혐의로 툴루즈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거열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이 범죄에 대해 제출된 증거란 극히 빈약했고 사건의 심리는 불충분했을 뿐더러 맹신에 물든 여론과 재판관들의 편견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알고 그 부당성에 분개한 볼테르는 사건기록을 재검토하고 칼라스 부인에게 상고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재심을 요구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이 때 그가 쓴 책이 『관용론 *Traité sur la Tolérance*』(1762)으로, 여기서 볼테르는 진실을 왜곡하는 광신과 편견을 공격하고, 사상의 자유를 감동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볼테르의 노력으로 마침내 1765년 칼라스는 무죄가 선언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럽 전역의 지식사회에서 기존의 야만적 형벌 제도에 대한 반성과 정의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켰는데, 볼테르가 이 해설서를 통해 상찬하고 있는 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 역시 이 사건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한 국가의 법률들 사이에 이처럼 엄청난 모순이 있다니! 파리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도시에서 일 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그를 시민으로 인정한다. 프랑슈 콩테 지방에서는 어떤 자유인이 상속 불가능 재산에 속하는 가옥<sup>67)</sup>에서 일 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자유인 신분을 박탈당한다. 그의 방계 혈족은 그가 다른 곳에서 얻은 재산일지라도 상속하지 못한다. 또한 그의 직계 자녀는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집을 일 년 이상 떠나 살면 집을 몰수당하고 거지 신세가 된다. 이 지방은 ‘자유로운’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sup>68)</sup> 도대체 이런 것이 어떻게 자유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속 권력과 교회의 관례 사이의 경계를 정하려 할 때 감수해야 할 끝없는 분란을 생각해 보라! 둘 사이의 경계선은 어느 지점에 위치시켜야 할까? 국세 징수와 법률 사이에 끊임없이 존재해 온 모순을 그 누가 풀 것인가? 어째서 몇몇 지방에서는 판결의 이유가 제시되는 적이 없는가? 자신이 내린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군주의 이름으로 판결하는 사람들이 사형 판결을 집행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어째서 군주에게 설명하지 않는가?

우리의 법을 이리저리 둘러보면 사방에 모순과 가혹함, 애매함과 자의성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는 금세기에 모든 것을 완성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을 완성하는 데 힘을 모으자. 법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다.

67) une maison mainmorte, ‘상속 불능(mainmorte)’이란 중세 봉건시대 농노제의 연장으로, 농노나 가신 등의 보호 하에 있는 개인은 재산을 상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사망하면 그들의 유산이나 권리는 영주에게 재귀속된다. 이때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상속자가 영주에게 세금을 내야 했다.

68) 프랑슈 콩테는 프랑스 동부의 지방으로 부르그뉴 백작령이었는데, 1127년 이 지방의 영주 레날드 3세가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 백작이 됨으로써 자유 백작령(Franche-Comté)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때 ‘자유’란 세금, 의무 등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이곳은 15세기부터 합스부르크 왕가인 스페인 왕의 지배를 받았으며, 루이 14세 때인 1678년 네이메헨 평화조약에 의해 프랑스 영토가 되었다.